

201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장애인 차별과
혐오 해소를 위한 토론회

일 시 : 2019. 4. 23.(화) 14:00~16:30

장 소 : 창원컨벤션센터 302호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장 이경우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을 맞이하여,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와 함께 <장애인 차별과 혐오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토론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과 차별입니다. 혐오표현이란, 어떤 개인과 집단에 대해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지닌다는 이유로 차별·혐오하거나 차별·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그래서 혐오표현은 단순히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혐오표현 대상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고 우리사회의 차별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혐오발언과 차별은 장애인, 여성, 노인,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실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응답자의 70.5%가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을까봐 두렵다고 답하였고, 79.5%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온라인에서 접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9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님 취임 이후 혐오차별에 대한 대응을 위원회의 우선 과제로 정하였고, 2019년 혐오차별대응기획단과 특별추진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혐오차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9년에는 토론회, 인권 캠페인 등을 통해 혐오차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사회적 대응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혐오표현 관행 개선과 자율규제를 위한 연구·정책 개발·홍보·협력 활동을 다각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우리사회의 차별 해소를 위해 차별 금지법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혐오는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구조적 차별을 재생산하며, 다양한 차이를 가진 ‘모든’ 사람의 ‘공존’을 위협합니다. 따라서 혐오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혐오차별 문제에 대한 지역의 문제의식을 높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각 주체의 역할에 대하여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장 **이 경 우**

토론회 일정 및 순서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 일시 : 2019. 4. 23.(화) 14:00~16:30
- 장소 : 창원컨벤션센터 302호

시간	내용
14:00~14:05	❖ 개회선언
14:05~14:10	❖ 인사말 - 이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장
14:10~14:15	❖ 환영사 - 이해진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대표
14:15~14:20	❖ 축 사 - 김진기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장내정리 5분)	좌 장 : 이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장
14:25~14:50 (25분)	[기조발제]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 : 배경과 양상, 대응 이승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14:50~15:05 (15분)	[현안발표 1] 장애인 비하·혐오표현의 사례와 실태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15:05~15:20 (15분)	[현안발표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 원인과 현상 김문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20~15:35 (15분)	[토론 1] 차별과 혐오 대응,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김태은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주무관
15:35~15:50 (15분)	[토론 2] 차별과 혐오 대응, 인권시민단체 제언 송정문 경남장애인권리옹호기관 관장(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15:50~16:20 (30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30	폐 회

- [기조발제]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 : 배경과 양상, 대응 1
 이승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 [현안발표 1] 장애인 비하·혐오표현의 사례와 실태 11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현안발표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 원인과 현상 21
 김문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1] 차별과 혐오 대응,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49
 김태은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주무관)
- [토론 2] 차별과 혐오 대응, 인권시민단체 제언 57
 송정문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 [부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61
- [부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9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장애인 차별과 혐오 해소를 위한 토론회

기조발제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 : 배경과 양상, 대응

이승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 : 배경과 양상, 대응

이승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장애인 차별과 혐오 문제 해소를 위한 토론회>(2019.4.23)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 : 배경과 양상, 대응

이승현 (법학박사, 연세대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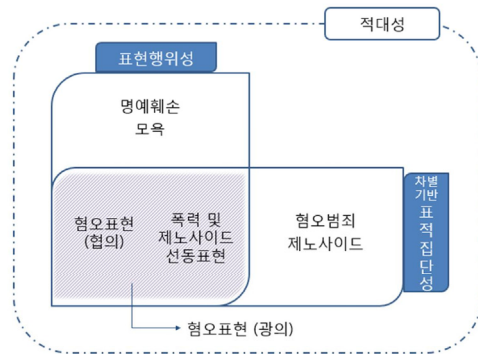
혐오표현의 개념

- 인종, 민족, 종교, 장애, 성별, 성적지향 등에 기하여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기반한 적대적 표현행위
- 해당 집단에 대한 차별은 변화 불가능한 인격적 구성요소로서의 속성을 이유로 혹은 전제로 하여 일어나는 것으로서 일시적인 차별대상이 아니라 해당 표적집단에게 장기간 축적되어 지배적인 관념으로 고착된 편견과 차별의식에 기인

- 혐오표현은 차별대상집단(표적집단)에 대한 사회의 차별의식이 가시화된 것이자, 그 차별의식을 확산·공고화·실현하는 작용을 함
- 표적집단은 그 사회의 권력적 약자로서 혐오표현의 해악성의 효과가 미치는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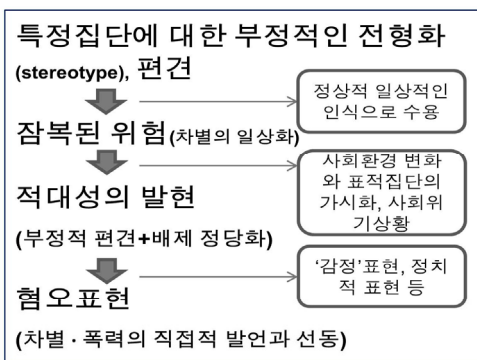
- ❖ 구별해야 하는 개념
 - ✓ 단순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의 표출
 - ✓ 현행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표현
 - ✓ 혐오범죄(증오범죄)

- ❖ 혐오표현의 개념요소: 차별기반 표적집단성(집단적 차별성 및 차별의 역사성), 적대성, 표현행위성



혐오표현의 배경

- 혐오표현 규제 등장배경
 -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인종차별의 극단적인 형태인 집단학살의 경험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와 유럽국가들의 대응 ex.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 1960년대 미국 민권운동, 정치적 올바름 운동과 함께 인종차별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나아가 다른 소수자차별 문제제기로 확대



- 특정집단을 표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 증오, 폭력의 선동이 집단학살로 이어질 수 있음 ex. 나치의 유대인집단학살, 르완다 집단학살

혐오표현의 양상

- 표적집단의 속성이나 그 속성을 보유한 인간 자체가 흉악하거나 더러움
- 표적집단은 아동과 같이 무지하거나, 불쌍한 동정적인 존재로서 지도나 교육이 필요함
- ‘일반적인/정상적인/올바른’ 타인들, 나아가 사회전체나 세계전체에 악영향을 미침
- 따라서 이들을 제거하거나 혹은 교정하는 것이 사회전체 이익이나 도덕성에 비추어 올바름(정당화의 과정)

혐오의 특징 (Warman v. Kouba, 2006CHRT50)

- ① 표적집단이 사회의 주요소식을 지배하여 타인의 생존이나 안전등을 침해하는 강력한 적으로 묘사,
- ② 신뢰성이 높아 보이는 실화나 뉴스보도영상 등을 이용하여 표적집단을 부정적으로 일반화,
- ③ 표적집단이 어린이, 노인, 약자들을 이용한다고 묘사,
- ④ 표적집단이 오늘날 사회나 세계전체가 가진 문제의 원인으로 묘사,
- ⑤ 표적집단이 본질적으로 위험 또는 폭력적인 존재로 묘사,
- ⑥ 표적집단의 구성원이 무가치하고 생략적으로 사악하다는 사상을 전달하는 표현,
- ⑦ 표적집단에 의한 해악으로부터 타인을 구하기 위해 해당집단을 추방, 격리, 절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달하는 표현,
- ⑧ 표적집단을 동물, 해충, 배설물과 비교하여 비인간화 시키는 것,
- ⑨ 극단적으로 강한 적대감과 모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매우 선동적으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
- ⑩ 표적집단의 구성원이 과거에 경험한 박해나 비극을 과소화하거나 축복하는 것,
- ⑪ 표적집단에 대한 폭력을 선동

혐오표현의 해악성

- 표적집단 구성원의 존엄성 침해
 - 지속적, 경험적으로 장기간의 차별을 받아온 특정집단에 행해지는 것으로써 혐오표현의 대상은 주로 사회적 소수자로 인지되고 있는 집단구성원들임. 표적집단 구성원에게 공포감, 위축감, 좌절감, 내면의 자기부정을 야기함. 혐오표현이 특정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표적집단 구성원 전체를 칭하는 경우에도 혐오표현이 가지는 표적집단성과 적대성의 요소로 인하여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공포와 위축으로 연결됨

ex. 심리적 두려움, 슬픔, 지속적인 긴장감, 자존감 손상, 소외감, 무력감. 일이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회적 영향도 발생.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온라인: 장애인 58.4%, 성적 소수자 57.8%, 기타여성 51.0%, 오프라인: 장애인 58.8%, 이주민 56.0%, 성적 소수자 49.3%)

출처: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국가인권위, 2016)

- 공론장의 왜곡
 - 혐오표현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외면화되는 표적집단에 대한 차별적 환경하에 표적집단 구성원은 공적 토론의 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데 두려움을 가지게 됨 → 표적집단 구성원이 공론장에 참여할 실질적 기회를 박탈
 - 표적집단 구성원을 침묵시키는 한편, 다른 사회구성원들이 몸담고 있는 공론장 전체에 표적집단에 대한 적대적 사상을 만연시킴 → 공론장의 토론문화 왜곡

▪ 표적집단 구성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영속적인 불평등

- 표적집단 구성원의 인격을 저해하고 공포감을 심는 것으로 인해 표적집단 구성원에게 자기부정과 자기비하가 내면화될 때 표적집단 구성원들은 차별 받는 상황을 납득하고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다른 표적집단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식을 강화시켜 자신의 취약성과 배제의 상황을 전복시키려는 현상 발생
 - 사회전체에 있어서 표적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의 확산은 표적집단 구성원이 차별의식에 노출된 일상생활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함
 - 혐오표현으로 인한 공론장의 왜곡은 정책과 제도상의 불평등을 촉진하거나 혹은 불평등 방지 및 시정을 회피하게 만들
- ❖ 이와 같이 혐오표현이 해악의 효과로서 차별의 내면화, 일상의 차별 및 제도적 차별은 상호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나타나며, 모든 층위에서 표적집단에 대한 평등의 실현을 방해함
- ❖ 이상과 같은 혐오표현의 해악성은 표적집단 구성원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주의 원리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하에서 국가로 하여금 이를 억제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정당성이 인정됨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한계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대한의 보장 요청: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는 표현 내용규제로서 엄격한 합헌성 심사가 요구됨
 -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의 실효성: 혐오표현 억제의 효과가 있는가?
 - ex. 혐오표현 규제로 인해 편견과 차별을 사회 내로 잠복시킴으로써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을 잃어버리게 됨, 혐오표현 발화자를 자극하고 더 극단적인 행동으로 몰아가게 되거나 자기정당화를 불러올 수 있음, 혐오표현의 표적집단들이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함
 -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가 현시대의 한 시점에서 혐오표현 규제는 혐오표현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래에까지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음
 - 보다 근원적으로 혐오표현을 발생시키는 표적집단에 대한 제도적·구조적 차별을 철폐하고 사회에 만연한 차별의식을 개선시킴으로써 표적집단이 더 이상 표적집단이 되지 않아도 될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임
- ❖ 한국상황에서의 한계
- 권위주의 정부 시대의 표현규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험, 현재에도 표현규제 법률 다수 존재: 표현의 자유 제한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급격한 경제적·사회적 변화, 양극화의 심화, 집단갈등의 심화: 차별에 대한 인식과 그 효과에 대한 이해, 시민적 관용의 성장이 필요함

현행법과 그 한계

현행법	한계
「형법」상 모욕죄	- 보호법익이 사회적 평가 저하(인격적 평가 저하가 아니므로, 표적집단에 대한 낙인찍기를 승인하는 효과가 발생)
「형법」상 명예훼손죄	- (개인들을 특정할 수 없는) 집단에 대한 모욕죄에 적용 불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 등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의 근거법률, 해당 규정의 내용, 적용상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성희롱	성희롱과 중첩되는 혐오표현에 한정 적용가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괴롭힘	적용을 위한 구체성 결여, 진정에 대한 인용건수 크지 않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법무부장관 시정명령·과태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신랄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2.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목의 정보 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라.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게시물 차단, 삭제 등

혐오표현 억제를 위한 국가적·시민적 대응

-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 조건의 조건과 유의점: 기존의 일반적인 명예훼손 및 모욕 표현과 구분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혐오표현의 유형·전달매체·성질·발화자의 지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함. 혐오표현이 정치적·정책적 표현의 형태를 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대항언론에 대한 적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됨
-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을 표적집단 구성원의 인격권 vs. 혐오표현을 하는 자 혹은 그러한 사상을 가진 자의 표현의 자유 간의 충돌로 한정하여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공인의 혐오표현, 언론기관의 혐오표현은 혐오표현의 해악성이 강력할 수 있는 동시에 그 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커짐에 유의함
- 혐오표현 대응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이는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가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한 정책적 선결조건이므로, 법적 규제 도입과 무관하게 이행되어야 할 과제임
- 교육과 캠페인: 학교교육과 시민교육.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라, 표적집단인 소수자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이해 및 사회에서 접하는 일상의 차별에 대한 경험적인 교육이어야 함. 다른 한편, 규제주체인 국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인식교육 및 국가기관과 공무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도 병행
- 대항언론 활성화: 대항언론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표적집단이 대항언론을 일상적으로 행할 수 있을 정도의 스스로의 역량과 주위의 지지기반이 필요함. 예를 들어 표적집단이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에서 모일 수 있는 물리적 공간, 관련 단체에 대한 물질적·금전적 지원을 통한 추상적 공간의 확보를 위한 정책 대응이 유효함

- 자율규제: 시민사회의 각 영역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혐오표현을 포함한 차별의 억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실행의 권장
- 제도적 차별철폐와 차별철폐를 위한 제도적 대응: 기존의 차별적 제도를 철폐하는 동시에, 사회적 차별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ex. 차별금지법, 소수자할당제

참고자료: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기본요소>

I. 문제 현황

- ❖ 오늘날 혐오표현은 고의적, 무의식적, 관습적으로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며, 특히 온라인을 통해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 ❖ 혐오표현은 소수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고 사회생활에 대한 참여를 어렵게 하며,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평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조건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심각하다.

II. 가이드라인의 목적

- ❖ 이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이 가이드라인은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로 하여금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혐오표현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 ❖ 이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긍정하면서, 혐오표현을 통해 다른 구성원들과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이 파괴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III. 법적 근거

- ❖ 이 가이드라인의 혐오표현 예방·대응 정책은 다음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 i) 국제인권규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등
 - ii) 국내 법령: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성희롱 관련 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인권 관련 조례 등
 - iii) 조직 내 각종 규정: 행동규범, 윤리준칙 등

III. 법적 근거

- ❖ 이 가이드라인의 혐오표현 예방·대응 정책은 다음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 i) 국제인권규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등
 - ii) 국내 법령: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성희롱 관련 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인권 관련 조례 등
 - iii) 조직 내 각종 규정: 행동규범, 윤리준칙 등

IV. 적용범위

- ❖ 가이드라인은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된다.
- ❖ 가이드라인은 조직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온라인 활동이 포함된다.
- ❖ 가이드라인은 조직과 계약, 사무위임, 위탁, 예산지원 등의 관계를 맺고 있는 타 기관의 구성원들에게도 적용된다.

V. 혐오표현의 개념과 판단기준

- ❖ 혐오표현의 개념: 혐오표현이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차이를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행위를 말한다.
 - 1)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표출: 어떤 집단의 부정적인 속성이나 특징을 말하여 선입견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
 - 2) 멸시, 모욕, 위협: 어떤 집단을 동물이나 혐오스러운 것에 비유하여 멸시·모욕하거나, 욕설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
 - 3) 차별·폭력의 선동: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조장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을 차별과 폭력에 동참시키는 행위
- ❖ 혐오표현의 판단기준: 위의 혐오표현 개념에 해당하는 표현을 통해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한 경우로 혐오표현으로 간주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1) 발화자의 의도, 2) 발화자의 권력 및 피해자와의 권력관계, 3) 표현된 언어의 내용과 형식, 4) 표적집단에 대한 파급력 및 전파력, 5) 피해의 지속성과 반복성 여부, 7) 표적집단이 처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환경
- ❖ 혐오표현의 방법: 혐오표현은 말과 글뿐만 아니라, 차별을 상징하는 복장, 상징물, 퍼포먼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VI.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 ❖ 모든 구성원은 혐오표현 예방·대응에 대한 책임이 있다.
- ❖ 모든 구성원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바탕으로, 혐오표현의 문제를 인식하고 혐오표현 발생 시 신고와 조사에 협력해야 하며, 대항언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 ❖ 조직의 관리자는 조직 내에서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 개발, 교육, 홍보, 혐오표현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과 공정한 절차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

VII. 예방

- ❖ 혐오표현 예방·대응을 위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혐오표현에 관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인식 제고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VIII. 사건 처리 원칙과 절차

- ❖ 조직적 차원에서 혐오표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원칙과 절차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구성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 ❖ 모든 구성원은 혐오표현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목격했을 때 조직 내 책임부서에 신고한다.
- ❖ 혐오표현 관련 사건 처리 절차와 그 운용 시에 책임부서는 다음에 유의하여 대응한다.
 - 사건 발생 시 적시에 대응 절차 진행
 - 혐오표현에 관한 상담과 중재 등 비공식 절차의 운용
 - 피해자와 피신고인의 분리
 - 피해자의 비밀과 사생활 보호
 - 피신고인의 보복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대책 마련
 - 피해자 및 해당 표적집단에 대한 지원
 - 피신고인의 재발론 및 소명 기회 보장
 - 허위 신고에 대한 대책 마련
 - 사건 관계자의 지위와 관계없이 공정한 절차 적용
 - 가해자에 대한 교육, 징계 등 가능한 조치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
 - 해당 공동체 내 자율적 해결과 법적 해결의 조율
 - 후속조치로서 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 결정, 사건 기록 보관, 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 상담과 지원을 위한 인프라/네트워크 형성

IX. 검토

- ❖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의 정책과 집행을 매년 점검하고 평가하여 개선해야 한다.

출처: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국가인권위, 2018)

참고자료: 유럽 주요국의 혐오표현 관련 규제법

국가	법률명	규제 내용
프랑스	언론과 자유에 관한 법	- '민족·국가·인종·종교', '성·성적 지향·성 정체성·장애'를 이유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및 모욕하는 행위 - '민족·국가·인종·종교에 속하는지 유무'를 이유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차별, 적대감, 폭력을 선동하거나, '성·성적 지향·성 정체성·장애'를 이유로 적대감 및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
영국	공공질서법	- '인종적 적대감을 고무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거나' 혹은 '모든 상황상 인종적 적대감이 유발될 것 같은 경우'로써 위협적, 매도적, 모욕적인 말, 행동, 글을 공개 하는 경우 - 종교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위협적인 말 또는 행동을 하거나 그러한 글을 공개하는 경우
독일	형법	- 국적·인종·종교·민족에 의해 규정된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해 증오·폭력·자의적 조치를 선동하거나, 모욕·악의적 경멸·중상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경우
캐나다	형법	- '피부색·인종·종교·민족·성적 지향'에 의해 특정되는 집단에 대해 그들의 집단살해를 옹호·조장하는 행위 - '피부색·인종·종교·민족·성적 지향'에 의해 특정되는 집단에 대해 치안 상 우려가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적대감 선동 행위 혹은 고의의 적대감 선동 행위(예외규정 있음)

참고자료: 국내 혐오표현 관련 법률안

법률안	내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2013.6.20.)	제311조의2(혐오)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공연히 사람을 혐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별금지법안 (김재연 의원 대표발의, 2012.11.6.) *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의 차별금지법안 (2013.2.12.),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의 차별금지법안(2013.2.20.)도 유사규정을 두고 있음. 두법안은 2013.4.24 철회되었음	제2조 2. "괴롭힘"이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지거나, 수치심·모욕감·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위협적·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3조(괴롭힘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성별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② 누구든지 성별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괴롭힘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영 의원 대표발의, 2015.6.9.)	제110조의2(지역 등 비하 언동 금지) 누구든지 정당(정당의 구성원을 포함한다)·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가족 또는 선거사무관계자의 선거, 그 밖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지역 사람을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3.6.18.)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대표발의, 2017.4.12.)	제311조 ②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를 표현할 목적으로 신체 특정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소재로 한 부호·문란·음성·화상·영상·영상을 이용하거나 성적 언동을 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오표현규제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2018.2.28일 철회됨	'성별·장애·병력 등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폭력·증오 선동·고취 행위, 공개적 멸시·모욕·위협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확산 방지 관련 기본 계획, 시정 명령 및 이행재검급 부과를 규정하는 한편, 법원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처분 등을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2018. 9. 18.) *2018.10.11 철회됨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4.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반복적 혹은 공공연하게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장애인 차별과 혐오 해소를 위한 토론회

현안발표 1

다름을 혐오하는 사람들

-장애인 비하·혐오표현의 사례와 실태-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다름을 혐오하는 사람들 -장애인 비하·혐오표현의 사례와 실태-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1. 들어가는 이야기

와상장애인이 활동지원사와 함께 지하철을 탔다. 그런데 그때 주변에 서있던 50대 여성이 활동지원사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장애인당사자를 가리키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게 낫지, 힘 드시겠어요” 그 이야기까지는 워낙 자주 듣는 이야기이기에 장애인당사자도 활동지원사도 못들은 척 하고 있었다. 하지만, 곧이어 그 여성분이 활동지원사에게 “요즘 안락사도 있고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방법을 찾아야지 저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장애인당사자분이 우리 상담소에 찾아와 들려준 이야기이다. 너무 놀라 따지는 것조차 잊었다는 그의 말에 그저 한숨이 나올 뿐이었다.(사례1)

사람을 앞에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죽는게 낫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장애인은 살아 있을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아무꺼리낌이 없는, 이것이 다름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장애인을 혐오하면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혐오라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회에 아무 도움도 안되는 우리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사람이기에 그런 취급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혐오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장애인당사자조차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이 나를 혐오하는 것이고 괴롭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이유도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의 행동에 어떻게 해야할지 그저 난감할 뿐이었다.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나의 신고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2.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률가들만의 논의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장애인당사자를 중심으로 장애인단체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렇기에 장애인당사자가 느끼는 차별의 상황이 법안에 그대로 담겼고, 그 안에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되었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법안에서 우리는 명백하게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차별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결국 장애인에 대한 혐오행위는 명백하게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명시가 되어 금지되는 행위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혐오는 큰 죄의식없이 계속되고 있다.

요즘 학교에 인권교육을 진행하러 가보면 학생들 사이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욕설이 있다. 바로 ‘애자’ 라는 말이다. 이 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이들이 누군가를 욕할 때 ‘장애자’ 를 줄여서 쓰는 말이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은 이 말을 실제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다. 그냥 다른 욕이라고 알려진 말들만에 하나로 쓰는 이야기인 것이다. 인권교육을 하러 온 강사 앞에서도 아이들은 쉽게 이 말을 쓰고 있었다.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냥 뭔가 부족하고 잘 못하고 그냥 이상하면 쓰는 말이에요’ 하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리고, 최근 학생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요즘은 ‘동성애자’ 와 ‘장애자’ 를 함께 표현하는 말이라고 한다.(사례2)

학교안에서의 이런 상황은 어른들이 만들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장애인과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그리고 이야기되는 모습들이 그대로 학교안에 녹아들어간 것이다.

몇 년전 아프리카 tv라는 1인 미디어 방송에서의 장애인 혐오발언이 큰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몇 십만명의 팬을 확보하고 있는 유명 BJ들이 “장애인한테 사람 대접해줘야 합니까”, “한국기업가서 민폐네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내가 분석을 해봤는데 자폐아들이 많은 거 같애”, 또한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자 “이×× 이거 이상한데. 장애인같이 행동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차를 타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나가며 “여기는 또 뭐 전부 장애인이나. 자랑도 아니고 장애인 저 구석에 좀 해놓지”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사례3)

당시 강력한 문제제기로 해당 매체는 관련 BJ 들에게 정지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1인 방송에서 장애인을 흉내내거나,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데려다가 괴롭히는 장면을 영상으로 내보내거나 하는 사건이 계속되었다. 또한 유튜브 등 점점하거나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1인 방송이 늘어나면서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비하를 담는 내용들이 자극적으로 늘어나지만 이에 대한 법적 대응과 조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확인이 되어 방송을 중단시켜도 또 다른 1인 방송 플랫폼을 찾아서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근절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접하게 된다. 특히 나이가 어린 연령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달되는 정보속에서 정보의 가치와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이러한 미디어 매체에서의 혐오는 강력한 대응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안에서 아무리 많은 장애인인권교육을 진행한다해도 결국 이러한 잘못된 정보와 인식이 더 빨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1월 장애인당사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전 대표인 홍준표 대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에 대한 혐오 비하발언 사건으로 진정을 진행했다.

이해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지만 산업재해로 후천적 장애를 얻은 분들이 많아 저도 놀랄 때가 있다"면서 "그런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은"이라고 했다가 "제가 말을 잘못했다"고 고쳐 말했다. 하지만 곧이어,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사람들은 정신장애인"이라며 "정치권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는 "국민은 그 말을 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말한다" 라며 장애인 비하발언에 합세하였다.(사례4)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정당을 구성하고 정치의 중심에 서있다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국민의 한 사람인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도 자신들이 무슨말을 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이후에 이해찬 대표가 크게 문제가 되자 겨우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글을 게시했다.

장애인의 혐오와 사회전반의 인권의식을 점검해야하는 이러한 정치인들의 비하발언은 우리사회에서 왜 이와같은 혐오가 문제가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을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정치안에 과연 장애인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정말 답답할 뿐이다.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전혀 지원체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방송국과 함께 일상을 촬영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방송이 방영된 적이 있었다. 이후 이 방송의 댓글에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담겨 있었고, 방송에 나왔던 장애인당사자는 엄마로서 너무나 큰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댓글의 대부분은 '지 몸도 가누기 어려워면서 무슨 아이를 키우냐', '장애인이 무슨 애까지 키우겠다고 하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였다.(사례5)

이후에 관련하여 댓글에 대한 법적대응을 준비했었다. 하지만, 현재 국내법 체계상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적용할 법도 없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처벌조항이 약해서 대응이 쉽지 않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사례로 장애인단체에서 놀이공원에서의 장애인 이용제한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송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놀이동산인 E놀이동산에서 현장검증이 진행되었다. 이 현장검증에 많은 언론사가 관심을 보이면서 많은 매체에서 기사화되었다. 당시 이 기사의 댓글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었다. '이제 장애인들이 놀이기구도 타겠다', '먹고사는 것 나라에서 해줬더니 놀기까지 하겠다고 난리를 치네' 등등 장애인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하적인 내용을 담은 댓글이 가득했다.(사례6)

장애와 관련한 기사들 중 미담을 담은 내용이 아닌 경우 이러한 비하댓글은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러한 댓글은 사람을 특정할 내용이 아니라 장애인 전체에 대한 혐오를 담은 내용으로 현재는 댓글 안에서 싸움을 하는 것 이외에는 법적인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하기 위한 근거나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비하가 실제 행위로 이어지지만, 오히려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장애인당사자가 지하철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자 옆자리에 여성분이 코끝에서 손사래를 치면서 “냄새가 왜 이렇게 심해, 다들 냄새안나세요?” 하면서 주변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장애인분을 바라봤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장애인당사자를 따라다니며 이런 혐오발언을 계속하다가 자신이 앞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결국 당사자의 굽혀지지 않는 왼쪽다리에 걸려서 넘어졌다. 그런데 그 여성이 자신을 일부러 발로 찼다고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장애인당사자가 오히려 폭행가해자로 기소유예를 받았다.(사례7)

장애인에 대한 혐오는 단순히 말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러한 행동들 안에서 장애인당사자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혐오는 이유가 없다. 그저 장애가 있는 우리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다르다는게 이유라면 이유이다.

3. 맺는 이야기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는데 보편적인 차별금지법이 장애인에게 필요하냐는 질문을 요즘 자주 받는다. 물론 장애인은 이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10년 넘게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만을 빼서 과연 장애인당사자가 차별받지 않게 될까? 그리고 그렇다면 10년이 넘은 이제쯤에는 위에 언급했던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사건들은 좀 줄어들었어야 하는게 아닌가?

우리는 결국 모두 다른데...다름이 인정되지 않으면, 장애를 빼더라도 무언가 다른 이유로 또 다른 혐오와 차별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에게도 보편적인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모두의 차별이 금지되지 않으면, 그래서 어느누구도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그래야 장애인도 혐오로부터 빠져나올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이며 법 위반이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매우 약한 처벌조항은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이니 하지말라고 이야기할 뿐 현실적인 처벌은 쉽지 않다. 결국 장애인이 많이 겪는 혐오속에서 나오는 괴롭힘 상황이지만, 실제로 욕설이 오고가거나 폭력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형사적인 절차를 밟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욕설이 오고간다하더라도 꼼꼼하게 녹음해서 증거로 제시하지 않는 이상 약식기소로 벌금형이라도 받는 것도 매우 힘들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에 유일한 차별금지법이다. 그리고 인권법이다. 이제는 인권의 문제를 더 깊이있게 규정해나가야 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보편적인 차별금지법이 장애인차별금지법처럼 처벌조항이 약한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혐오를 강력하게 규정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장애인의 삶에 너무나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혐오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하다. 누군가는 무엇이든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세상이 너무 각박하지 않냐고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정말 각박한 세상은 쉽게 장애인을 혐오하는 시선과 말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한국에서 살고 있다가 몇 년전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아예 정착하신분이 계신다. 30세가 넘는 발달장애인 딸과 함께 살고 계신데 정착하신 이유를 들으며 너무나 부끄러웠다. 친척을 만나기위해 처음 외국으로 방문했을 때, 발달장애로 인해 간혹 남들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 딸과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너무 놀랐다고 한다. 아무도 신경쓰거나 필요이상 아는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편안함을 경험한 이후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딸이 한국에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다니러갈 때 가기전에 미리 일주일이상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한국에 가면 누가 널 쳐다볼수도 있어,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걸수도 있어, 모르는 사람이 너한테 나쁜말을 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어'

지금 한국의 장애인은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 내가 장애가 있어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장애인 차별과 혐오 해소를 위한 토론회

현안발표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회적 낙인의 현황과 원인, 극복방안을 중심으로-

김문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회적 낙인의 현황과 원인, 극복방안을 중심으로-

김문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서론

우리사회는 현재 극심한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성별, 성적 지향, 정치적 이념, 종교, 세대, 소득수준, 출신지역, 민족적 배경이나 국적 등이 다른 집단들 사이에 극심한 갈등과 대립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정신질환을 장기간 경험함으로써 장애를 지닌 정신장애인을 향한 편견과 낙인, 차별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의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정신장애인을 향한 불합리한 공포심 조장, 배제와 격리, 사회적 통제의 논리가 넘쳐난다.

지난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고 임세원 교수가 외래치료를 위해 방문한 정신질환자의 공격으로 사망하자 정신의학계와 국회는 일명 ‘임세원법’을 발의하여 4월 5일 의결하였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제기와 당사자 옹호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국회의결을 통과하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은 퇴원하는 정신장애인들 및 보호의무자의 결정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그들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심히 우려스럽다. 정작 사회의 극심한 낙인과 차별에 시달려야 하는 정신장애인과 보호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공공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당사자들로서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정신건강복지분야 전문가들의 문제제기, 당사자단체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은 통과되었다. 실로 사회적 낙인의 힘은 강력하여 정신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가 아니라 사회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

향으로 작용하고 말았다.

분명한 것은 이런 갈등적 관점의 이면에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므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보다 사회일반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시각이 뿌리깊이 내재돼 있다는 점이다. 한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와 이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법 개정을 통해 공식화 한 것인데, 이러한 낙인과 차별이 향후 우리사회가 정신장애인을 포용하고 그들의 인권과 복지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될지 우려스럽다.

많은 사람들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단지 '그들의 문제'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18세 이상 우리 국민 중 평생동안 니코틴 및 알코올 중독을 제외한 정신질환을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13.2%로 나타났다. 불안장애는 약 9.3%, 우울증 등 기분장애는 5.3%이다(홍진표 외, 2017). 결코 적은 수가 아닐 것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전국적으로 2017년 말 현재 101,000명을 넘어섰다. 이 같이 많은 국민들이 경험하는 정신질환과 이로 인한 정신장애에 대해 역설적이게도 너무나 편견과 낙인, 차별이 극심하다. 어쩌면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정신건강문제를 지닌 사람들에게 대해 낙인과 차별을 가함으로써 우리의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자신을 해롭게 하는 자해를 벌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본 발표자는 정신장애인을 향한 사회적 낙인은 무엇이며, 그 실태는 어떠한가, 그로 인해 사회 및 정신장애인들에게 나타나는 폐해는 무엇인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사회적 낙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현황과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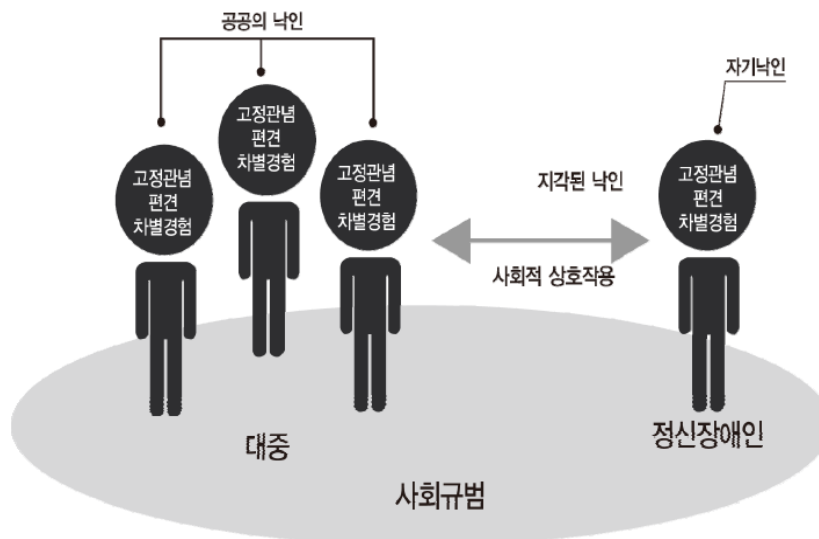
1) 사회적 낙인의 개념

Goffman(1963)은 낙인을 개인의 손상된 인격적 특성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곧 낙인을 본질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된 어떤 특성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사회적 낙인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향해 갖는 고정관념(stereotype), 부정적 정서태

도인 편견(prejudice), 구체적 차별행위(discrimination) 등을 포함한다(Corrigan, 2000). 특히 사회적 낙인은 부정적 특성이나 차이에 대한 명명, 이러한 차이를 부정적 고정관념과 연결짓기, 차이에 근거한 우리와 타자의 분리, 타자들의 사회적 지위 손상과 차별경험을 포함한다. 특히 이러한 제반 과정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권력의 작용을 포함한다(Link and Phelan, 2001).

뿐만 아니라 문헌들을 살펴보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은 ① 시민들이 보유한 낙인(public stigma), ② 정신장애인이 지각한 낙인(perceived stigma), ③ 정신장애인의 자아개념의 일부로 존재하는 자기낙인(self-stigma)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Corrigan, Kerr and Knudsen, 2005). 즉 정신장애인들을 향해 시민들이 낙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들은 이러한 시민들의 낙인이 어떠한다고 지각할 수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의 낙인을 받아들여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자기낙인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신장애인은 시민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그들의 반응과 태도로부터 사회적 낙인을 직접 지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들을 차별하거나 낮게 평가하는 법률이나 제도, 영상물이나 언론의 보도 등 사회규범 속에도 사회적 낙인은 존재한다.

[그림 1]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의 존재 양식



* 출처 : 김문근(2016), 167면에서 인용.

그렇다면 사회적 낙인의 내용은 무엇일까?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중들의 낙인을 측정하는 도구들을 살펴보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은 정신장애인을 향한 권위적 태도, 자비심, 사회적 제한 등을 포함한다(Corrigan, 2000). 국내에서 개발된 다른 낙인척도에 의하면 ‘위험성’, ‘회복이 불가능함’, ‘쉽게 식별할 수 있음’, ‘사회적 무능력’ 등을 포함한다(김정남, 2003). 한편 정신장애인이 지각하는 낙인을 측정하는 도구들을 살펴보면 ‘가치저하’, ‘차별’이라는 두 가지 요소(Link, 1987), ‘회복불가능’, ‘위험성’, ‘쉽게 식별할 수 있음’ 등 세 요인(서미경, 김정남, 2004) 등이 낙인의 주요 내용이라 하겠다.

이를 종합해 본다면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사회적으로 위험하고,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이 잘 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무능력하며, 쉽게 식별될 수 있다는 낙인이 존재하며,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도 이러한 사회적 낙인을 지각한다. 특히 정신장애인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치를 낮게 볼 것이며, 차별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는다. 사회구성원들은 이들을 향해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동정이나 자비와 같은 온정적 태도를 가질 수도 있으며, 이들을 사회에서 통제해야 한다는 관점을 갖는 경향이 있다.

2) 사회적 낙인의 현황

최근 국립정신건강센터(2018)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적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를 더 위험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았고, 정신건강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거나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을 지역사회에서 허용하는 등 사회통합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거부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시민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질문 내용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	82.3	12.7	4.9
정신질환은 치료 가능하다	68.1	25.0	6.9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63.6	25.1	11.4
한번이라도 정신질환에 걸리면 평생 문제가 있을 것이다	26.6	29.5	44.0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더 위험한 편이다	60.8	29.0	10.2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다	50.2	38.4	11.4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우리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	34.1	43.4	22.6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38.0	39.5	22.5

* 국립정신건강센터(2018), 20-21면의 일부 자료를 인용함.

한편 이용표 등(2017)이 실시한 대국민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은 총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3.3으로 나타나 약간 높은 수준의 낙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문항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해 위험하다는 인식, 고용통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 결혼과 같은 긴밀한 인적관계 형성에 대해 거부감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립정신건강센터(2018)의 연구에 나타난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편견과 낙인, 차별적 태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즉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해 관념적 수준에서는 호의적이고, 공감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실제 긴밀한 상호작용 하는 상황을 가정할 때는 거부적, 차별적 태도나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2〉 일반 국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 현황(%)

질문 내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에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2.4	17.3	31.4	42.9	6.0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사람과는 결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1.5	8.9	25.8	49.3	14.4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1.5	12.1	27.3	47.1	12.0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던 사람을 고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1.3	10.0	29.2	43.4	16.2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두려워한다	2.0	13.7	32.3	42.1	9.9

* 이용표 외(2017), 333면의 자료를 일부 인용함. 측정도구는 Link 등(1997)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도(Perceived Devaluation-Discrimination)활용.

한편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미디어는 정신질환을 범죄의 잠정적 원인으로 간주하는 듯 한 기사를 내보내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편견은 강화될 우려가 있다. 국내외 연구 및 국내 범죄통계결과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폭력범죄 비율이 일반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지는 않다. 대규모 조사연구결과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그 자체로서 폭력적인 행위나 범죄를 유발하는 강력한 원인이라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알코올, 물질, 약물 등의 남용과 의존,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 사회적지지 부족, 외래치료 중단 등의 조건들이 충족될 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폭력행위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향은 있다(최기홍, 2017; Elbogen & Johnson, 2009; Volakvska & Citrome, 2011).

한편 전국의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이 지각하는 편견수준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10가지 편견으로 구성된 문항을 활용하여 조사한 김문근과 김이영(2008)의 연구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정신장애인들은 일반인들이 정신장애인에 대해 직업생활이 어려움(51.3%), 대인관계가 어려움(50.4%), 열등함(47.6%), 회복되지 않음(47.5%), 위험함(46.6%) 등의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 긍정하는 비율이 높아 편견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인과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낙인 인식을 비교한 서미경과 김정남(2005)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인보다 정신장애인은 낙인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낙인에 대해 회피적인 대처를 하는 경향이 있어 차별행동과 관련한 실제적인 경험은 일반인보다 더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편견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는 위험하고 사고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12.9	15.9	24.6	28.3	18.3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는 사회에서 격리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5.5	19.9	25.2	25.1	14.2
사람들은 정신질환은 낫지 않는 병이라고 여긴다	13.0	15.8	23.8	27.4	20.1
사람들은 정신질환은 유전된다고 믿는다	19.2	20.1	22.1	26.0	12.6
사람들은 정신질환은 특정한 사람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한다	17.4	23.8	23.6	22.9	12.4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는 이상한 행동만 한다고 생각한다	14.0	18.7	20.4	30.3	16.7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는 대인관계가 어렵다고 믿는다	11.2	15.6	22.9	32.9	17.5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는 직장생활을 못한다고 생각한다	12.6	14.3	22.1	30.7	20.4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는 운전·운동을 하지 못한다고 믿는다	15.6	18.0	23.3	27.3	15.7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는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12.9	17.6	21.9	27.9	19.7

* 출처 : 김문근, 김이영(2008), 53면에서 인용.

한편 언론의 보도는 실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의 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과학적 근거를 자세히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험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최기홍, 2017). 한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 및 시민들은 최근 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정신장애인은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사회가 정당하게 운영된다고 믿을수록 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지선, 2015). 언론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가장 영향력 높은 매체라는 점에서 사회적 낙인의 전파자 역할을 할 우려가 크므로 절제된 보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사회적 낙인의 폐해

이러한 정신장애인을 향한 사회적 낙인이 끼치는 영향은 무엇보다도 정신장애인의 자아개념을 손상시킨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기대를 갖게 마련이고, 어떤 평가를 항상 내리고,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그런데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신장애인이란 존재에 대한 부정적 의미 부여이며, 부정적 역할기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에서 정신장애인은 스스로 자신을 부정적인 존재로 바라보게 되고, 사회적 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져 삶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김문근, 2016; 서미경, 김정남, 2004). 이미 오래전 Link(1987)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정신병원 입원이나 반복적인 정신질환 치료를 받게 되면 사회로부터 가치저하와 차별(devaluation-discrimination)을 예상하게 되므로 전반적으로 동기가 저하되며(demoralized), 소득감소 및 실업기간 증가와 같은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사회적 낙인은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습득한 사람들은 정신건강문제가 자신에게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가치가 저하되고 차별을 받을 것(devaluation-discrimination)을 예상하므로 자신의 질병을 감추거나(secretcy), 사회적 교류로부터 물러나는 회피적 반응(social withdrawal)을 보이기 쉽다(Link et al., 1989). 정신건강문제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정신의료기관을 통해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며, 치료를 받을 때 증증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로 진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높을 경우 사회로부터 자신에 대한 가치저하나 차별을 예상하므로 정신건강문제를 받아들이고 치료를 받는데 심리사회적인 저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치료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쉽게 치료를 중단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낙인은 사회구성원들에게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게 하거나 정신장애인과 상호작용을 기피하게 할 수 있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와 통제를 위해 강제입원이나 격리수용을 승인하는 등 정신장애인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기 쉽다(Corrigan and Rüsçh, 2002). 특히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범죄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시민들의 의식 속에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다는 편견과 낙인이 활성화되고, 이들

에 대한 강제치료나 강제입원, 격리수용과 같은 극단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기 쉽다. 예컨대 지난해 12월 31일 강북 삼성병원 고 임세원교수가 정신질환자 외래진료 중 환자의 공격으로 사망하자 정신의학계와 일부 국회의원은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구 정신보건법을 전면개정 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을 다시 개정하여 강제치료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설사 법을 개정하여 강제치료를 강화한다 해도 이러한 사고가 더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하지만 강제치료를 강화하면 우리나라의 만성적 문제인 비자발적 입원 및 장기입원으로 인한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는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평균 입원기간은 145.7일로 영국(37.7일), 멕시코(29.9일), 독일(25.1일), 프랑스(22.7일), 스웨덴(16.1일) 등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장기입원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OECD, 2018). 주요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보다 이토록 장기간 입원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왜 정신장애인들의 치료와 재활이 더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없고, 정신장애인들은 강제입원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입원치료는 결코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우리사회는 위험과 관련된 사건을 접하면 관성적으로 그들을 즉각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강제입원과 강제치료를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오히려 정신장애인의 자발적인 치료를 저해하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가와 정신건강복지전문가, 가족들의 수고와 노력에 장애물이 되고, 정신장애인들의 치료와 재활, 자립에 대한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정신장애인이 직업을 갖거나 어떤 교육기관에서 학습을 하거나 특정 지역에 재활시설을 운영하거나 주택을 마련하여 거주하는데 대한 극단적인 거부, 배척, 차별로 인해 정신장애인의 기본적인 생존과 지역사회참여와 통합을 저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본 발표자는 최근 서울지역의 정신장애인 주거시설 운영자와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지역주민의 낙인과 차별을 극복해 낸 사례를 연구한 적이 있다. 처음 정신장애인 주거시설을 설치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저항과 반발은 노골적이었고, 한 마을에 살면서 늘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아 마을을 불결하게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고, 혹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주민들의 싸늘한 반응에 시달려야 했다는 것이다. 정신장애인과 주거시설을 운영하는 전문가는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다’, ‘보통사람처럼 이웃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지극히 평범한 욕구를 절실하게 호소할 만큼 사회의 극심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해야 했다고 한다(김문근, 2019). 아래의 언론 인터뷰는 시민 일반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관념상의 편견과 낙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웃으로 정신장애인을 마주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정신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처우하는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장애인을 밝히고 취업하거나, 거주할 주택을 구하거나,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지역사회의 문화·복지·예술 관련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들이 가능하겠는가?

“처음 이곳에 와서 정신장애인 시설을 만든다고 했을 때, 주민들은 반대했었습니다. 특히 저희 집 바로 옆집 주인아주머니께서 세 든다고 했을 때, 가장 반대했었죠.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은 정신장애인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절도, 성추행, 음주소란 사건 등이 일어나면 ‘즉시 떠나겠다’ 라는 각서까지 요구했다고 한다(복지연합신문, 2013.12.7.)

이러한 낙인은 정신장애인들에게는 ‘족쇄’와 같이 벗어날 수 없는 억압과도 같았으며, 점점 그들은 ‘사회의 구석으로 내몰리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해야 했다는 것이다(김문근, 2019). 그래서 정신장애인들은, 시민들에게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당연시 되는 ‘평범하게 어울려 함께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을 간절하게 소망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정신장애인들에게 삶의 기본적인 욕구, 곧 사회적 생존을 위한 욕구가 시민들의 의식과 태도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낙인으로 인해 제한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으므로 누군가의 생각과 태도를 검열할 수는 없다.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신념을 극단적으로 제약하거나 관리하려 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동등한 주체라 할 수 있는 정신장애인의 복지와 인권 보장, 사회통합을 위해 그들을 향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대한 성찰과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4. 사회적 해법은 무엇인가?

1) 사회적 낙인을 어떻게 완화,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사회적 규범 속에 존재하며, 시민들의 내면에 편견으로, 차별적 태도로 존재하며, 일상의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

속에 생생히 재현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회적 낙인을 완화,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학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연구되어 있는 교육(Education), 항의(Protest 및 Advocacy), 사회적 접촉(Contact) 등 세 가지 접근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① 교육(Education)

-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면 낙인이 감소할 것이다.

교육접근은 정신장애인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비과학적이거나 근거가 없는 부정적 인식으로 구성된 편견 및 낙인을 갖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낙인 감소전략이다. 교육적 접근은 1) 공공기관의 발표, 2) 도서, 3) 팸플릿, 4) 영화 및 비디오, 5) 웹 페이지, 6) 팟캐스트, 7) 가상현실 및 기타 시청각 매개체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에 광범위한 보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두드러진다(Corrigan et al., 2012).

예컨대 2000년 호주에서 개발한 Mental Health First Aid 프로그램은 정신질환 및 정신적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신체적 위기에 대한 응급구조의 원리를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인데, 그들에 대한 체계적인 원조의 원리와 기술을 약 1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하는데 우울증, 불안장애, 정신증, 알코올약물중독, 자살 및 자해 위기상황 등의 주요 정신질환과 정신과적 위기 상황에 대해 교육하고, 적절한 응급원조방법을 훈련한다. 이교육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효과는 교육 종료시점 뿐만 아니라 교육 후 6개월 이내까지 추적조사하였을 때도 유의한 낙인감소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Morgan, Ross, Reavley, 2018). 이 프로그램이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갖는 이면에는 정신건강문제를 지닌 사람들이 응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강화하게 되고, 그런 인식의 틀이 형성됨으로써 정신장애인에 대한 거부, 배척, 차별적 태도의 완화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국내 연구에 소개된 영국의 Mental Health Awareness program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정신장애인과 직접적인 만남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6개월 후에도 이러한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종익, 전미나, 2016). 하지만 최근에 이루어진 학교기반 정신건강교육프로그램들의 효과

를 연구한 논문들에 대한 메타분석에 의하면 엄격한 연구설계를 적용한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변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alerno, 2016).

이러한 교육적 프로그램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점을 습득하는 성장기 아동, 청소년 등에게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이 된 후에는 이미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낙인이 형성되어 있어 좀처럼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Corrigan et al., 2012).

그러므로 교육을 통한 낙인해소는 정교한 이론의 뒷받침이 없다면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감소시키기 어려운데, 이는 사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규범, 미디어, 일상적인 대화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계기가 있어야 이런 낙인이나 차별적 태도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인가?

② 항의(Protest 및 Advocacy),

- 당사자가 역량강화되어 항의하면 낙인은 감소할 것이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지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적 태도는 사회에 발붙일 곳이 없어졌다. 한 세대 전으로 되돌아가 본다면 지체 장애인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어떻게 이렇게 한 세대만에 사회적 낙인과 차별은 극적으로 완화될 수 있었을까? 그에 대한 하나의 답은 당사자들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통한 집단적인 항의와 권리옹호가 법·제도와 같은 규범의 변화와 함께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킨 결과일 것이다. 우리는 2006년 국제장애인권리협약, 2008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이제는 익숙한 규범이 되었다. 장애인들의 편리한 접근을 위한 ‘접근장애제거(Barrier Free)’의 원칙은 물리적 환경이나 IT 정보체계 등에도 광범위한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신장애인을 향한 낙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접근을 통해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까? 본 발표자는 10년 전과 비교할 때 ‘그렇다’는 긍정적 대답을 확신 있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지난 2016년 그 동안 당연시되어 왔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의 무자(주로 가족)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한 비자발적 정신의료기관 입원을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장애인을 보호하는 가족 등은 큰 우려를 표했다. 헌법 재판소가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2014년부터 조직화되어 정신보건법의 인권억압 조항을 개정해야 하겠다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의 체계적인 항의와 옹호 활동이 절대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지난 해 문제로 등장했던 ‘강서 PC방 살인사건’이나 지난 해 연말 발생한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등은 하나 같이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는 낙인을 시민들의 의식 속에 상기시키는 사건이었다. 그로 인해 경찰청은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려 했고, 최근에는 정신의료계와 일부 국회의원이 비자발적 입원을 용이하게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나?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는 경찰과 정부의 정신장애인 인권억압적 조치에 대해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항의하였다. 정신건강복지전문가들도 당사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당사자들의 법률적 권리옹호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전문 법학자들과 공익변호사들은 오히려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장기입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안적인 법률안을 제시하며 강력한 항의와 옹호를 펼치고 있다(제철웅, 2019).

이와 같은 항의와 옹호접근은 가시적인 차별적 행위를 중단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rrigan et al., 2012). 누군가 사회적 낙인과 차별행위를 보일 때 공개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문제 삼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정의하고, 반인권적 행태라고 규정해 내고, 정신장애인의 인권 존중과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때 적어도 규범적 차원에서 이를 반박할 만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오히려 낙인과 차별적 행태를 보인 개인이나 집단, 사회가 심각한 오명을 쓰게 되므로 공개적인 항의와 옹호는 강력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항의 및 옹호접근의 가장 큰 미덕은 무엇보다 사회적 낙인에 억압되어 있던 당사자들의 비판적 의식화와 임파워먼트를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스스로의 목소리와 힘으로 지켜내도록 변화시킨다는 점이다.

‘사회문제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사회문제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정하는가, ‘사회문제 해결방안이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결국 사회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당사자집단의 조직적인 옹호는 그들을 향한 낙인과 차별을 막아내는 가장 중요한 접근일 것이다. 이러한 옹호활동에는 당사자집단 뿐만 아니라 동조하는 시민사회 단체 및 활동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협조가 중요하다. 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정신건강전문가, 장애인권익옹호단체 등의 참여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③ 사회적 접촉(Contact)

- 직접 만나 교류한다면 정신장애인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접촉은 자연적인 사회화를 통해 형성된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낙인을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다양한 판단의 근거를 갖는다. 너무나 익숙한 관습이나 관행, 상식, 과학적 근거, 언론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 주변 사람들의 반응 등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시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한 근거는 스스로의 경험적 증거이다. 종종 우리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 잘못된 일반화를 저지름으로써 오류를 범하기도 하지만 스스로에게 자신의 경험만큼 확고한 증거는 없기에 그 효과는 막강하다. 사회적 만남을 통해 낙인을 교정하려 하는 접촉 전략은 그래서 유효하다.

사회적 접촉의 방법은 대면접촉과 비디오를 통한 간접 접촉이 활용되고 있었는데, 그 효과는 대면접촉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셜마케팅을 위해 일선에서 비디오를 통한 간접접촉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보다 직접적인 접촉을 늘릴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Corrigan et al., 2012).

구체적인 사례로는 2007년 영국에서 실시한 국가적 프로그램인 ‘Time To Change’, 2001년 독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Crazy? So What?’ 등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각각 참여자들에게 정신질환자나 조현병 환자에 대한 낙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었다(박종익, 전미나, 2016). 국내에서도 정신장애인과의 간접접촉이나 직접접촉 경험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거리감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류승아, 2017). 특히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회복경험을 직접 강연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이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민화, 서미경, 2015). 이처럼 사회적 접촉 프로그램이 다른 접근들에 비해 긍정적 효과를 거두는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논의할 것이다.

2) 정신장애인의 내재화된 낙인을 완화하는 접근

① 수정된 낙인이론의 관점

Link 등(1989)은 ‘수정된 낙인이론(Modified Labeling Theory)’을 통해 ‘낙인에

대한 사회화(학습) → ‘정신질환 진단(치료 개시)’ → ‘낙인의 자기적용’ → ‘가치저하 및 차별 기대’ → ‘삶의 부정적 결과’라는 원인론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낙인이 어떻게 형성되어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설명한 바 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낙인을 생성시키는 사회화과정을 관리하여야 낙인 완화가 가능할 것이다. 통상 사회화는 가족 내 상호작용, 사회의 공식적 교육과정, 각종 미디어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런 사회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에 대한 메시지가 관리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② 사회적 역할가치화 이론의 관점

Wolfensberger(2000)는 정신장애인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저하된 역할만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로 인해 긍정적 역할에 대한 기회가 제한되고, 긍정적 자아개념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적으로 정신장애인이 긍정적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고,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 사회적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신장애인이 담당하는 환자역할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긍정적 역할을 부여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그 동안 정신장애인에게는 정신질환자라는 역할만이 요구되었고, 그들에게는 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지 않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구 정신보건법 제24조), 행정기관장에 의한 입원(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응급입원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 입원이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퇴원에 대한 결정도 보호의무자,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정신보건심판위원회 등에 의존하므로 비자발적 입원률이 높았고, 장기입원문제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치료받고 재활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는 기회가 심각하게 제약을 받아왔다.

통상 정신건강분야에서는 정신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굳이 ‘정신질환’으로 규정해버린다. 그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은 합리성이 없고,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로 간주되어 사회의 낙인과 차별의 대상이 되어 왔다. Goffman(1961)의 연구나 Deegan(1992)의 연구 등은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장애인을 오로지 사회에서 전적인 통제를 받아야 하는 일탈자와 같이 인식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재활기관 등 사회는 정신장애인을 어떻게 처우해야 하는가?

다수의 연구들은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낙인화된 자기개념을 가지므

로 심리적 복지, 재활과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긍정적 자아개념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긍정적 역할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사회의 성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학습자의 역할, 자원봉사자의 역할, 근로자 역할, 이웃주민의 역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 등 다양한 긍정적 역할을 보장할 때 자기를 스스로 낙인화하는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 하는 과학적 이론들이 있다. Gresky 등(2005)은 부정적 낙인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집단 구성원일수록 낙인과 관련이 없는 다른 긍정적 자아가 존재할 때 낙인의 위험으로부터 부정적 효과가 감소한다는 점을 연구를 통해 입증했다. 이런 이론을 정신장애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앞에서 열거한 긍정적 역할들이 있을 때 자기낙인화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본 발표자의 연구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들이 보호작업이나 임시취업과 같은 아주 제한적인 직업적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그들은 사회적 낙인을 유의하게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적 역할을 스스로 지니고 있으므로 그에 근거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규정할 수 있기에 자아를 손상시키기 쉬운 사회적 낙인을 방어해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문근, 2009).

③ 임파워먼트 접근(역량강화접근)

정신장애인들이 자신들을 향한 사회적 낙인을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들이 스스로 항의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오랫동안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 그들을 오로지 정신질환자로만 규정하는 정신의료모델에 의해 억압되어 있다. 즉 스스로 인권의 주체이며,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고, 필요한 복지를 누려야 하는 존엄한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의식화가 되어 있지 않은 정신장애인들에 대해 그들이 경험하는 사회의 낙인과 차별, 억압이 그들 자신의 잘못이기 보다는 사회의 부정의이며,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갖고, 작은 일에서부터 권익을 옹호해 나가도록 사회정치적인 의식화와 집단적 행동화를 촉진하는 것이 임파워먼트 접근이다(김문근, 2016).

지난 10여 년 동안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사회정치적 의식화는 급진전하고 있다. 하나 둘 당사자 옹호단체가 결성되어 집단적인 옹호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가그룹도 점차 사회복지, 정신재활, 장애인권익옹호단체, 법학자 및 공익법률가 등

으로 다원화되고 있다. 이처럼 입파워먼트적 접근을 위해서는 정신장애인들의 커밍아웃이 중요하다. 커밍아웃은 스스로가 정신장애인임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권익옹호에 나서기 위한 첫 출발이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정신장애인은 스스로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Bos et al., 2009; Corrigan et al., 2010). 그런데 자신의 정신장애를 공개할 수만 있다면 그 과정에서 오히려 심리적인 해방감을 느낄 수 있고, 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사회의 낙인에 대해 저항하거나 이를 개선시키는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커밍아웃은 자신의 가치와 권리의 중요성과 사회적 낙인과 차별의 부정의를 깨달을 때 촉발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이루어지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저항과 권리옹호 활동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큰 만족과 보람을 줄 수 있다(김문근, 2019).

3)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 : 통합적 접근

본 발표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Symbolic Interactionism)에 근거해 정신장애를 이해하고, 전문적 실천과 정책적 접근을 정리한 책을 출간한 바 있다(김문근, 2016).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따르면 집합적으로 사회를 구성하여 살아가는 인류가 갈등보다는 상호 조화되는 협력적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대상(Social Object)에 대해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의미(Meaning)가 공유되어 있고, 사회구성원들은 공통된 의미와 일관된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대상에 부여되어 있는 의미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되고, 재현되고, 유지되고,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낙인은 정신장애인에게 부여된 사회적 의미(Social Meaning)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다’, ‘회복되지 않는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다’와 같은 부정적 의미들이 공유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회구성원들은 자기보호를 위해 정신장애인을 피하거나 정신장애인을 격리 및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이 직업적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고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낙인을 인지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부끄럽고, 위험한 존재로 여길 것이고 사회적 접촉을 피하고 줄일 것이며, 직업재활이나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신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 또는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일로 여길 것이다. 오늘도 많은 정신건강전문직들은 정신장애인에게 ‘건강이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할 것이고, 보호제공자들은 ‘약만 잘 먹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말할 것이다.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고, 재활이 필요할 때에도 여전히 ‘취업하면 스트레스로 인해 재발할 수 있으니 건강에만 신경 쓰자’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런 인식들 속에 정신장애인은 억압당할 수밖에 없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내면으로 이런 사회적 의미들을 내재화시켜 자신을 억압한다.

그렇다면 사회구성원들의 낙인과 정신장애인들의 자기낙인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본 발표자는 법제도의 개선, 일상적인 규범과 미디어의 보도 등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장애인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자발적인 치료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정신장애인이 치료뿐만 아니라 직업, 주거, 문화여가, 교육 등 실질적인 복지지원이 필요한 전인적인 사람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는 정신질환과 위험성을 동일시하는 듯 한 무감각한 보도를 자중해야 할 것이다. 자신에게 우울증이 있거나 자기 가족에게 불안장애가 있다면 이 또한 정신질환으로 규정될 것인데,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사회의 혹독한 낙인이 적용되어도 좋은지 성찰해 본다면 미디어는 어떤 방식으로 보도해야 하는지, 어떤 편향적 프레임이나 관점들을 성찰해서 걸러내야 하는지 판단하고 보도기준을 스스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용, 교육, 주거 등의 영역에서 정신장애인들이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통합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신장애인들이 다양한 사회 내 일자리에서 취업하여 비장애인들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등에서 정신장애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여타의 장애인들과 차별 없는 교육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공동생활가정이나 공공임대주택, 자신의 주택에서 필요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일상적으로 이웃과 직장동료들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며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러한 모습이 자연적인 우리의 일상이 될 때 그들을 향한 낙인이나 차별은 사회구성원들의 의식 속에서, 정신장애인들의 의식 속에서 점차 희미해지고, 사라져 갈 것이다.

5. 결론

최근 사회의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가 많이 논의되어 왔는데, 혐오의 기원은 생물학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전염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라 한다. 이러한 혐오는 낙인과 차별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을 향한 극한 낙인과 차별은 본 발표에서 진단하고, 논의한 것처럼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고도로 향유하는 민주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의 표현이나 반응이 사회의 취약한 집단의 기본적 인권과 복지를 저해하는데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본 발표자는 공공기관이나 일부 연구자들이 국민일반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신장애인에 관한 인식, 태도, 편견, 낙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연구결과들은 ‘바람직한 응답편향’이 작용할 것이므로 응답자는 실제 자신의 생각과 거리가 있는 바람직한 응답을 표현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조사연구에서 아무리 우리 국민들이 정신장애인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나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더라도 실제 자신의 삶에서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발생하면 여지없이 낙인과 차별을 보이기 쉬우리라 생각한다. 관념적인 수준의 이해와 배려와는 차원이 다른 현실에서 우리는 자신의 낙인과 차별적 태도를 성찰하기는 쉽지 않다.

만일 우리가 진정 정신장애인들도 우리와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만한 인권을 지닌 가치 있는 존재들이며, 우리가 그들의 인권과 복지를 옹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실제 우리가 직면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도 정신장애인의 편에서 사고하고 그들의 욕구와 필요를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많은 정신의료기관들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정신장애인들을 입원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정신재활시설 및 주거서비스를 확충하지 않는 것도 정의롭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및 보호의무자들은 다른 대안이 없어 정신질환의 증상이 조금만 악화되어도 입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입원 후에는 다시 퇴원시켜야 하지만 그럴 용기와 자신을 갖기 어려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3개월 입원이 6개월이 되고, 1년이 될 수도 있다. 지역사회 일반 시민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정신장애인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정신장애인들은 설 자리가 없는 셈이다.

현대사회의 특성으로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적 스트레스가 많다. 만성적인 실업과 취업스트레스, 사회 전문분야에서 맹위를 떨치는 효율성과 성과 중심의 경쟁사

회, 동료도 친구도 없는 삭막한 사회에서 우리는 누구나 고독하고, 위태위태한 자아를 추스르며 오늘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우리 자신도 언제든지 정신질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오늘 우리가 무감각하게 정신장애인을 향한 표출했던 낙인과 차별은 우리 자신을 향할 것이다. 우리가 이 시점에 정신장애인을 향한 낙인과 차별을 성찰하고, 정신장애인을 포용하고,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정신장애인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 이웃과 우리사회 전체를 위함이다.

[참고문헌]

- 국립정신건강센터(2018). 대국민 정신건강지식 및 태도조사, 꾀럽·국립정신건강센터.
- 김문근 (2009). "직업적 역할은 정신장애인이 지각한 편견을 감소시키는가?" *사회복지연구* 40(3): 299-326.
- 김문근 (2016).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정신장애의 이해." 서울: EM 커뮤니티.
- 김문근 (2019). "영화제작을 통한 정신장애인 편견 개선 사례 연구", *사회복지연구* 50(1) : 5-34.
- 김문근, 김이영(2008). 재가 정신장애인 및 가족의 생활실태 조사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류승아 (2017). "소수집단에 대한 접촉경험, 위협감, 편견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31(4): 225-245.
- 박종익, 전미나(2016).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Korean Neuropsychiatr Assoc* 55(4):299-309.
- 박지선(2015).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Korean J Schizophr Res.* 18:16-20.
- 서미경, 김정남. (2004). "지각된 낙인이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6(4), 173-194.
- 서미경, 김정남 (2005). "정신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스티그마와 정신장애인이 지각하는 스티그마의 비교 연구." *신경정신의학* 44: 371-375.
- 이민화, 서미경 (2015). "정신장애인이 진행되는 접촉-교육 프로그램이 반낙인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3(3): 166-191.
- 이용표, 강상경, 김용득 외(2017).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현황조사 및 지원체계 연구, 가톨릭대학교·보건복지부
- 제철웅(20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상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서울복지재단·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최기홍 (2017). "범죄와 정신질환의 관계, 사회적 편견은 어느 정도인가?"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16: 19-28.
- 홍진표 외(2017). 2016년 정신질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삼성서울병원.
- Bos, A. E., et al. (2009). "Mental illness stigma and disclosure: Consequences of coming out of the closet."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30(8):

509-513.

- Corrigan, P.W.(2000). Mental health stigma as social attribution : Implications for research methods and attitude change, *Clinical Psychology : Science and Practice*, 7(1), 48-67.
- Corrigan, P.W., Kerr, A. and Knudsen, L.(2005). The stigma of mental illness : Explanatory models and methods for change,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11, 179-190.
- Corrigan, P. W. and N. Rüsç (2002). "Mental illness stereotypes and clinical care: do people avoid treatment because of stigma?" *Psychiatric Rehabilitation Skills* 6(3): 312-334.
- Corrigan, P. W., et al. (2010). "Self-stigma and coming out about one's mental illnes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8(3): 259-275.
- Corrigan, P. W., et al. (2012). "Challenging the public stigma of mental illness: a meta-analysis of outcome studies." *Psychiatric Services* 63(10): 963-973.
- Deegan, P.E.(1992). The independent living movement and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 Taking back control over own lives, *Psychosocial Rehabilitation Journal*, 15(3), 3-19.
- Elbogen, E. B. and S. C. Johnson (2009). "The intricate link between violence and mental disorder: results from the National Epidemiologic Survey on Alcohol and Related Condition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6(2): 152-161.
- Goffman, E. (1961) *Asylums: Essays on the Social Situation of Mental Patients and Other Inmates*. New York.
- Goffman, E. (1963). *Stigma: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Englewood Cliffs, NJ;Prentice Hall.
- Gresky, D.M., Ten Eyck, L.L., Lord, C.G. & McIntyre, R.B.(2005). Effects of salient multiple identities on women's performance under mathematics stereotype threat, *Sex Roles*, 53, 703-716.
- Link, B.G.(1987). Understanding labelling effect in the area of mental disorders : An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expectation of reje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96-112.
- Link, B.G., Cullen, F.T., Struening, E., Shrout, P.E. and Dohrenwend,

- B.P.(1989). A modified labeling theory approach to mental disorders : An empirical assess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400-423.
- Link, B.G. and Phelen, J.C.(2001). Conceptualizing stigma,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 363-85.
- Morgan, A. J., A. Ross, et al. (2018).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Mental Health First Aid training: Effects on knowledge, stigma, and helping behaviour." *PloS one* 13(5): e0197102.
- Salerno, J. P. (2016). "Effectiveness of Universal School-Based Mental Health Awareness Programs Among Youth in the United State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school health* 86(12): 922-931.
- Volavka, J. and L. Citrome (2011). "Pathways to aggression in schizophrenia affect results of treatment." *Schizophrenia bulletin* 37(5): 921-929.
- Wolfensberger, W. (2000). "A brief overview of social role valorization." *Mental Retardation* 38(2): 105-123.

[기타자료]

OECD Health Statics 201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장애인 차별과 혐오 해소를 위한 토론회

토론문

차별과 혐오,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김태은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주무관)

1.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특별사업 선정 배경

2010년부터 반(反)다문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외국인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 현상이 대두되었으며, 2012년 온라인상의 커뮤니티에서 등장한 혐오의 발언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혐오표현(Hate Speech)’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2018년 제주도 예멘 국적자의 난민신청 사안 등을 둘러싸고 혐오표현이 더욱 격화되면서 혐오 현상은 사회적 이슈로 촉발되었다.

근래의 조사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7~8명이 혐오표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혐오표현은 대개 여성, 장애인, 이주민·난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기대어 표출되고 그 양상 또한 일상화, 전면화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혐오표현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재생산 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혐오의 확산 배경에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과 같은 사회문화적 배경, 불평등 구조와 같은 경제적 요인, 혐오를 유포하는 대중매체의 등장, 정치적 맥락 등의 여러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혐오가 언제든지 폭력이나 범죄로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폭력과 증오범죄(Hate Crime)는 혐오에 대한 적극 대응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혐오표현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는 않다.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혐오표현이나 증오범죄(Hate Crime, 편견을 동기로 한 범죄)를 규정하는 내용이 다를뿐만 아니라 이를 규제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이에 위원회는 2016년 혐오표현의 전반적인 실태와 이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11월 제5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행동계획 논의 과정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특별사업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2. 2019년 혐오차별 대응기획단 설치

가.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2019. 1. 3. 시행)

- 제2조(설치)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5조(운영기간) 기획단의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2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나. 혐오차별 대응 관련 주요 업무

- 혐오차별 공론화 및 인식개선
 - 혐오표현 대응 범정부 정책선언 견인 및 협력
 - 혐오차별 관련 정책 검토
 - 혐오차별 실태조사
 -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 성별, 장애, 출신국가,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하는 혐오표현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권고를 통한 혐오차별 상황 개선, 교육 및 홍보를 통한 혐오표현 인식개선 및 예방, 혐오표현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등이 있다.

다.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구성

-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 혐오차별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25명의 위원으로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 2. 20. 출범 하였음.
- 혐오차별 대응기획단 추진업무 검토 및 자문, 혐오차별 대응 범정부, 범시민 공론 화사업 추진

라. 업무추진 방향

- 혐오차별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선언**과 종합적인 대책 수립 견인
- ※ 노르웨이는 2014년 중앙정부 합동으로 ‘혐오표현 반대 정책선언’을 발표하고 <혐오표현 대응전략 2016-2020> 5개년 계획을 수립, 사회적 공감대 형성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해 혐오차별 문제에 정부합동으로 적극 대응
-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에 한국 내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인종주의적 혐오발언 심화에 대한 우려 표명 및 단호한 대처 권고. 자유권규약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유엔 인권조약기구들은 성별, 성적지향, 인종 등에 기반한 차별 금지 법제 마련을 지속 권고
- 혐오차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회 각 영역에서의 여론조성 등의 공론화**, 대항문화 형성, 인식제고 홍보 및 교육 실시
- 공공영역, 학교, 인터넷 사업자 등이 혐오차별을 예방하고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
- ※ 유럽연합(EU)은 2016년에 유튜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혐오표현에 소극적으로 대응(미삭제, 방치)하는 경우 규제할 것임을 천명하는 가이드라인 발표

※ 2018년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실태조사

소속 기관에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모든 집단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별로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집단별로 2~4명 수준이었다. 초중고 교사는 응답자의 55.0%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고 '다소 필요하다'는 40.0%였다. 대학 교직원 및 기자 집단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5% 이상이 매우 또는 다소 필요하다고 보았고, 정부기관 공무원·직원 집단에서는 44.4%가 매우 필요, 48.1%가 다소 필요하다고 답하여, 전체 집단에서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함.

〈표 10〉 조직에서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단위: 명, %)

집단	매우 필요하다	다소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초중고 교사	33	24	2	1	0
	55.0	40.0	3.3	1.7	0.0
대학 교직원	23	20	2	0	0
	51.1	44.4	4.4	0.0	0.0
정부·지자체 공무원·직원	24	26	3	1	0
	44.4	48.1	5.6	1.9	0.0
기자	22	20	2	0	0
	50.0	45.5	4.5	0.0	0.0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이 필요 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는, 초중고 교사들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혐오표현의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혐오표현이 무엇인지 뚜렷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많았음. 가이드라인이 혐오표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학교에서는 학교 특성상 가이드라인이 효과적으로 자리 잡아 나갈 것이라고 기대함. 대학 교직원들도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였으며, 응답자가 대부분 실제로 사건 처리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혐오표현에 대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음.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공직사회의 특성상 조직 내에 어떤 기준이 있으면 비교적 잘 집행되는 편인데 혐오표현의 경우 그런 기준이 없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함. 언론사 기자들도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경우 기사 작성 과정에서 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의견을 줌.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경우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초중고 교사들은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견해가 많았음. 대학 교직원들과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조직 내 인식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고, 언론사 기자들은 언론사 특성상 내부에서 혐오표현성 기사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때 좋은 기준이 되고 기사 작성에서도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냄.

부정적인 효과는 대체로 모든 응답자 집단이 조직 내 갈등, 일부 집단의 반발, 표현의 자유 논란 가중 등을 지적. 초중고 교사들은 업무 과중 우려가 있었고, 대학의 경우에는 이미 구제절차를 운영하는 입장이어서인지, 신고 남발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었음. 언론사의 경우에는 기사 작성의 제약, 위축 효과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음.

3. 혐오차별에 대한 대응노력(제안)

- 혐오표현에 맞서 대항표현을 충분히 만들어 내는 것은 혐오표현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자 혐오표현을 예방하는 방법
- 대항문화 형성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의 실시이며, 다양한 형태의 정보전달(홍보자료 배포, 캠페인 등)을 통한 인식개선이라는 것이 국내외 다수의견
-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나와 다른 사람의 존재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모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공공의 장에서 누군가를 소외시키거나 차별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원칙**을 만드는 것이 필요

모욕과 멸시의 경험은 자신의 존재나 생각을 표현하는 일을 망설이게 한다. 혐오표현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다. 혐오표현 피해자를 옹호하거나 혐오표현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흔히 사용되는 말로 ‘신상털기’와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의 유통은 피해자에 대한 연대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의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혐오표현 발화자에 대한 법적 제제가 아닌 공적인 대화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대항표현이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말, 특정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멸시·모욕·위협적 말,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조장·선동하는 증오의 말에 맞서 사실과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여론의 쓸림 현상을 경계하는 것,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개인적 차원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개인, 집단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 등 모두가 대항문화로서 중요한 활동이다.

- ※ 1987년에 설립한 표현의 자유를 위한 국제인권단체 아티클 19가 제안한 혐오표현 대응방법(단체명은 표현의 자유를 천명한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서 유래)
 -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류 할 수 있는 가상, 현실의 공간 만들기
 - 혐오표현 등 불관용 및 폭력 사건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일
 - 정부, 시민사회, 사회전체의 대화와 교류(NGO, 경찰, 정책입안자, 예술가, 종교기관, 국제기구 등이 협력하여 연대하는 일
 - 독립적이고 다원적인 미디어 운영과 인터넷 중개자의 혐오표현물(物)에 대한 적극적 대응
 - 집단 간 유의미한 대화의 부재로 인한 고립과 단절의 결과로써 혐오표현 증가, 폭력·적대·차별 선동 등의 방지 활동(종교나 신념이 다른 집단 등 서로 다른 집단 간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대화나누기)

가. 혐오표현, 차별을 학습하다

어떤 사람이나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편견이 파고들 가능성을 높인다. ‘몰랐

다’ 또는 ‘모른다’는 것이 혐오표현이나 차별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혐오표현이 무엇인지, 왜 혐오표현이 차별에서 시작되었으며 차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예방할 수도 있고 대응할 수도 있다. 누군가로부터 모욕과 멸시의 말을 들었다면 숨지 말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것이 무척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나의 또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대항할 힘이 생긴다.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은 말할 수 있는 ‘개인의 용기’가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말할 수 있고, 사회가 그 피해에 공감하며 재발방지 노력을 할 수 있는 토대,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인권교육(인권, 차별,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다원적 정체성 등), 독서, 인권·시민 사회단체 활동 등**

나. 나와 다른 사람들과 접촉면을 늘린다.

〈창비어린이〉 2019 봄호에 실린 ‘낭만적 예찬을 넘어서’라는 김원영 변호사의 글에 이런 말이 있다. 우연히 길에서 만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자신을 보며 던진 어린이, 청소년의 ‘장애인이다!’라는 말과 시야에서 벗어날 때까지 눈을 떼지 않고 쳐다보는 시선은 그 청소년, 어린이가 태어난 동네나 다니는 학교에 장애인은 존재하지 않지만, 인권 교육이나 영상을 통해 장애인의 이미지를 만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아예 이미지를 본 적도 들어 본 적도 없다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신을 만났을 때 ‘장애인’이라고 특정하게 지칭하는지도 몰랐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해하다’는 말은 이성보다는 감정적 결단이라고 한다. 이 말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성적으로 이해를 시도할 때보다, ‘이해해보자’라고 마음먹었을 때 오히려 더 그 대상의 전후 맥락이 더 잘 보이고, 그 대상에 대한 나의 무지의 크기도 느껴진다. 당장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라도 같은 듯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늘어난다는 것은 서로의 생각의 서로의 머리와 마음으로 파고들 가능성을 높인다.

→ **다양한 집단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문화행사, 학술행사 등 개최(대항표현 말하기 대회, 다르게 함께 하는 인권캠프 등**

다. 나의 실천 3가지_함께 하다.

혐오표현은 생산, 유통(가공), 소비된다. 일반적 정보, 물류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그 모든 단계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고 있다. 무관심도 관여다. 인터넷 신문 등과 관련하여 어떤 이가 자신은 인터넷 신문에 여성을 상품화하여 기사를 읽게 하거나 물건을 판매하려는 내용을 보면 그냥 그 페이지를 빠져나오거나 필요한 정보만 찾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웹페이지 운영자에게 반드시 신고를 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이의 주장은 비록 당장 그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쌓이고 커지면 분명 달라질 것이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이나 인터넷 밖의 세상에서 혐오표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 나는 차별에 반대한다 : 나는 혐오표현을 생산하지 않는다. 나는 혐오표현을 나르거나 가공하지 않는다. 나는 혐오표현을 방치하거나 재밌거리로 소비하지 않는다.(연대와 지지 실천)

장애인 혐오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민관 협력의 중요성

송정문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1. 함부로 대해도 될 사람은 없다.

실제 장애인 대상의 사건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없고 소름끼치는 사건들을 접하곤 한다. 물론 장애인 혐오로부터 출발한 사건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교묘한 사건들이 많지만, 굳이 그러한 사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장애인 혐오 사건이라 생각한다.

우리 기관에 접수된 사건 중 몇 가지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인터넷 카페나 사이트에 가입할 경우 본인임을 인증하도록 하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임을 밝힌 순간부터 알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임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댓글을 달아 수치를 준 사건도 있었고, ▲어떤 회사 직원에게 불친절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직원이 장애인을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나가 장애를 비하하는 욕설을 하며 위협한 사건, ▲비염이 있는 장애인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콧물을 닦을 휴지를 공공시설 화장실에서 좀 챙기는 것을 본 어떤 사람이 이 장애인을 도둑으로 몰아 끌고 나가며 다치게 한 사건 등이 있었다.

그저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려 했을 뿐인데, 불친절한 직원에게 불친절하다고 항의했을 뿐인데, 콧물을 닦을 용도로 휴지를 사용한 것뿐인데, 이 사건에 처한 장애인은 장애를 빚댄 욕설과 비하 발언을 들어야 했고, 모욕을 당해야만 했고, 다치기까지 해야 했다. 이로 인해 사람들과 어울리고자 했던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장애가 있는 자신의 몸을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위축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무엇보다 혐오 사건이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위자들은 장애인이 약해 보인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임에도 장애를 이유로 한 비하표현과 욕설을 하는 데에 죄책감도 없고, 민원인임에도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 협박해도 되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은 감히 자신보다 강한 사람 혹은 자신과 동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할 수 없을 행위이기 때문이다.

2. 정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의 역할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장차법) 제32조에는 괴롭힘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즉, 혐오표현 중 장애인을 괴롭히는 표현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하여 대응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장애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라는 영역을 통해 대응하여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이지 않아 장애인 혐오에 대한 명확한 법적 명시와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항의 마련은 향후 개선해야 할 부분임은 분명하다.

이처럼 혐오 대응과 조치방법의 법적 근거는 피해자를 구제하고 장애 혐오표현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혐오 사건의 경우 법적 근거와 그에 따른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크다. 해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러한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게 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겠지만, 개개인의 인식 속에 깊게 뿌리내린 장애인에 대한 혐오는 법망을 피해 계속해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성희롱 처벌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성희롱이 법적 금지행위가 되어 해당 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오히려 처벌받은 사람이 피해자로 인식되고 실제 성희롱의 피해자는 직장에서 사표를 써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거나 아니면 그저 참으며 힘없는 부하직원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자책해야 했던 수많은 사례들이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 혐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실효성 있도록 조치 조항을 개정하는 일과 함께 필요한 것은 다각적인 영역에서의 인식 전환을 가져오는 일일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에서부터 기업 등 사적 영역까지 장애인 혐오표현에 대한 방지를 위해 일정한 예산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혐오표현의 개념과 해악성을 홍보하고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장애인 혐오 문제에 대해 일관된 정책방향을 갖고 개입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내에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혐오표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방송매체 등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의 혐오표현을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시 및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또한 중요할 것이다. 아무리 정부가 홍보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강조한다고 해도 결국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구석구석까지 개입하고 사회문화를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시민사회단체이지 않는가. 따라서 스스로 혐오표현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작게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상에서의 혐오표현을 모니터링하는 역할부터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3. 혼자가 아니도록

개인적인 경험으로, 내가 집에서 벗어나 사회로 나왔던 19살 당시 겪었던 일이 있다. 친구와 길을 가고 있었는데,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한 남성이 나에게 “불구자가 왜 나와서 돌아다녀? 재수없게.”라는 말과 함께 나를 향해 침을 뱉은 적이 있다. 당시 나는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 남성에게 화를 내며 대응했다. 그날 나는 나로 인해 더욱 문제가 커져서 누구 하나 다 칠까봐 오히려 말리는 상황이 되었고 그렇게 그 상황은 끝이 났다.

다시 가던 길을 가는 동안, 그 친구는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말을 하며 나에게 ‘저런 인간 말은 신경 쓰지 마’라며 위로해 주려고 애를 썼다. 당시 나는 웃어보이며 괜찮다고 하기는 했지만, 당시는 참 마음이 아팠다. ‘장애라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재수없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지만 그 사건이 내가 살아가는데 큰 상처로 남거나 다시 사회로 나오는 것을 막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그건 아마도 내 옆에서 내 대신 그 사람의 행위를 비판하며 나를 옹호해 준 친구가 옆에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친구들도 함께 분노해 주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이런 혐오표현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그 정도(?)는 혼자 대응하도록 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민관 공동의 역할이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에서의 혐오표현을 몰아낼 수 있어야 한다.

혐오표현에 상처받은 혼자로 남지 않도록 말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장애인 차별과 혐오 해소를 위한 토론회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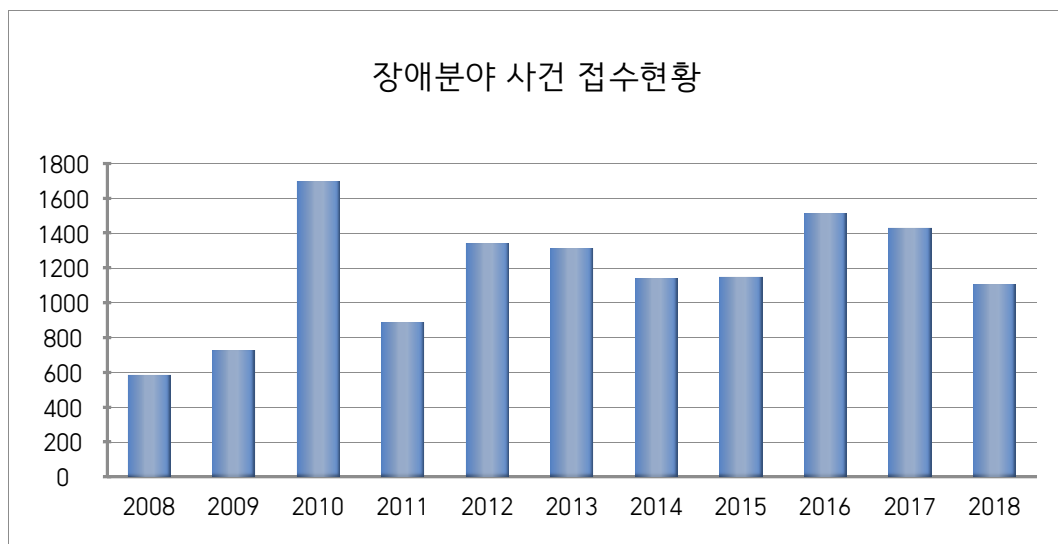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I. 진정사건 접수 : 장애차별 사건 접수 현황

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분야 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8.12.)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건수	585	725	1,695	886	1,340	1,312	1,139	1,147	1,511	1,428	1,102	12,870



[그림 1] 장애분야 사건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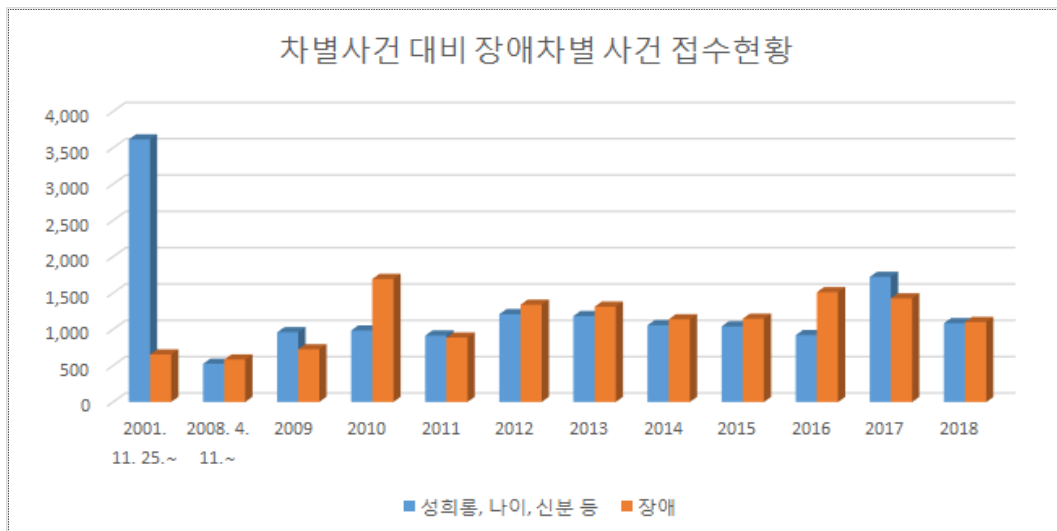
Ⅱ. 진정사건 접수 :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가.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2001.11.~2018.12.)

(단위: 건, %)

구 분			차 별 사 유		
			계	성희롱, 나이, 신분 등	장애
총계	2001. 11.~ 2018. 12.	진정건수	28,750	15,227	13,523
		비율(%)	100.0	53.0	47.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	2001. 11. 25.~ 2008. 4. 10.	진정건수	4,269	3,616	653
		비율(%)	100.0	84.7	15.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08. 4. 11.~ 2018. 12.	진정건수	24,481	11,611	12,870
		비율(%)	100.0	47.4	52.6
	2008. 4. 11.~ 2008. 12.	진정건수	1,111	526	585
		비율(%)	100.0	47.3	52.7
	2009. 1.~ 2009. 12.	진정건수	1,685	960	725
		비율(%)	100.0	57.0	43.0
	2010. 1.~ 2010. 12.	진정건수	2,681	986	1,695
		비율(%)	100.0	36.8	63.2
	2011. 1.~ 2011. 12.	진정건수	1,803	917	886
		비율(%)	100.0	50.9	49.1
	2012. 1.~ 2012. 12.	진정건수	2,549	1,209	1,340
		비율(%)	100.0	47.4	52.6
	2013. 1.~ 2013. 12.	진정건수	2,496	1,184	1,312
		비율(%)	100.0	47.4	52.6
	2014. 1.~ 2014. 12.	진정건수	2,197	1,058	1,139
		비율(%)	100.0	48.2	51.8
	2015. 1.~ 2015. 12.	진정건수	2,188	1,041	1,147
		비율(%)	100.0	47.6	52.4
	2016. 1.~ 2016. 12.	진정건수	2,432	921	1,511
		비율(%)	100.0	37.9	62.1

구 분			차 별 사 유		
			계	성희롱, 나이, 신분 등	장애
2017. 1.~ 2017. 12.	진정건수	3,152	1,724	1,428	
	비율(%)	100.0	54.7	45.3	
2018. 1.~ 2018. 12.	진정건수	2,187	1,085	1,102	
	비율(%)	100.0	49.6	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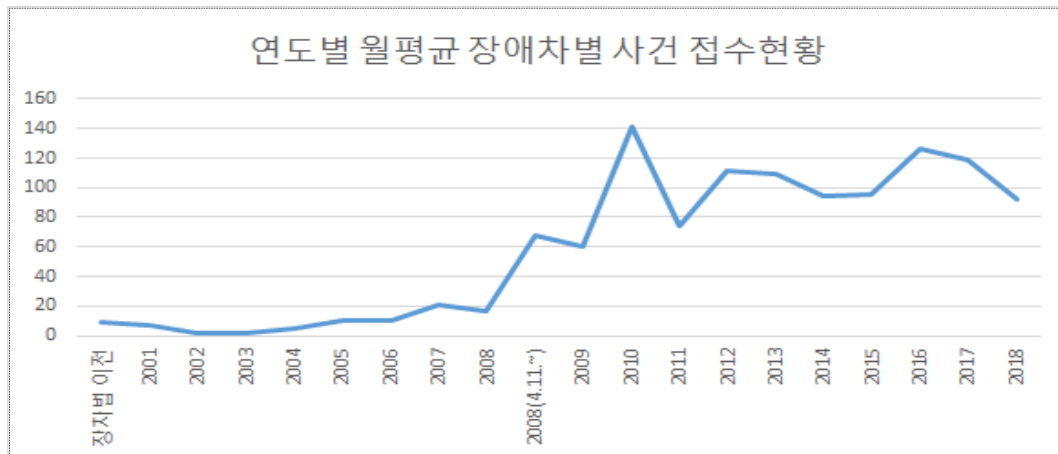


[그림 2]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

나. 연도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18.12.)

(단위: 건)

연도 (년 구분)	총	장애차별 이전	2001 (11~ 12월)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1 ~ 4.1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시행 이후	2008 (4.11 ~ 12월)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장애진정 건수	13,523	653	13	20	18	54	121	116	256	55	12,870	585	725	1,695	886	1,340	1,312	1,139	1,147	1,511	1,428	1,102
장애진정 건수 평균	65.6	8.4	6.5	1.7	1.5	4.5	10.1	9.7	21.3	16.5	100.5	67.2	60.4	141.3	73.8	111.7	109.3	94.9	95.6	125.9	119	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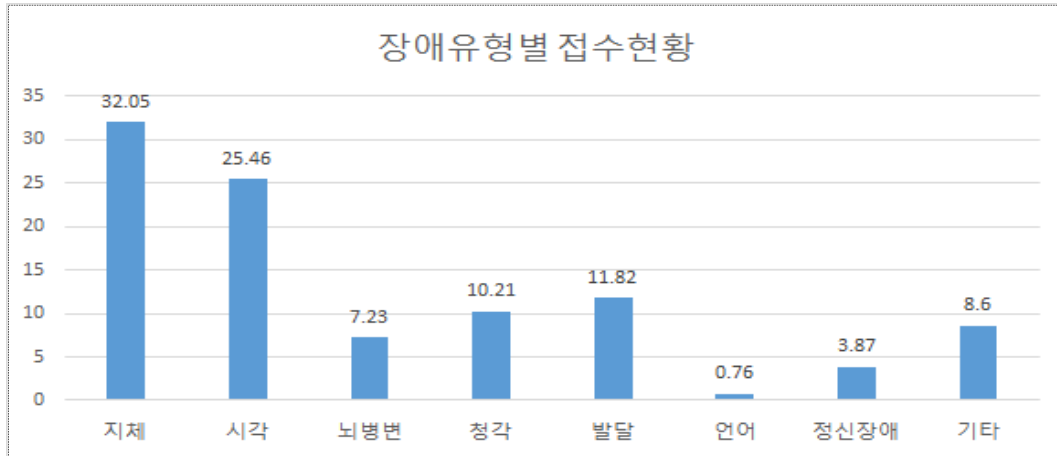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18.12.)

다.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8.12.31.)

(단위: 건, %)

년도	유형	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발달	언어	정신장애	기타
전체	사건수	12,870	4,125	3,277	931	1,314	1,521	98	498	1,106
	비율	<i>100.00</i>	<i>32.05</i>	<i>25.46</i>	<i>7.23</i>	<i>10.21</i>	<i>11.82</i>	<i>0.76</i>	<i>3.87</i>	<i>8.60</i>
2008	사건수	585	72	85	35	45	29	1	15	303
	비율	<i>100.00</i>	<i>12.31</i>	<i>14.53</i>	<i>5.98</i>	<i>7.69</i>	<i>4.96</i>	<i>0.17</i>	<i>2.56</i>	<i>51.79</i>
2009	사건수	725	288	91	69	46	70	11	44	106
	비율	<i>100.00</i>	<i>39.72</i>	<i>12.55</i>	<i>9.52</i>	<i>6.34</i>	<i>9.66</i>	<i>1.52</i>	<i>6.07</i>	<i>14.62</i>
2010	사건수	1,695	508	427	136	275	181	8	73	87
	비율	<i>100.00</i>	<i>29.97</i>	<i>25.19</i>	<i>8.02</i>	<i>16.22</i>	<i>10.68</i>	<i>0.47</i>	<i>4.31</i>	<i>5.13</i>
2011	사건수	886	297	142	57	72	214	8	48	48
	비율	<i>100.00</i>	<i>33.52</i>	<i>16.03</i>	<i>6.43</i>	<i>8.13</i>	<i>24.15</i>	<i>0.90</i>	<i>5.42</i>	<i>5.42</i>
2012	사건수	1,340	492	193	87	142	231	13	47	135
	비율	<i>100.00</i>	<i>36.72</i>	<i>14.40</i>	<i>6.49</i>	<i>10.60</i>	<i>17.24</i>	<i>0.97</i>	<i>3.51</i>	<i>10.07</i>
2013	사건수	1,312	380	299	71	251	115	7	50	139
	비율	<i>100.00</i>	<i>28.96</i>	<i>22.79</i>	<i>5.41</i>	<i>19.13</i>	<i>8.77</i>	<i>0.53</i>	<i>3.81</i>	<i>10.59</i>
2014	사건수	1,139	402	290	92	112	104	13	55	71
	비율	<i>100.00</i>	<i>35.29</i>	<i>25.46</i>	<i>8.08</i>	<i>9.83</i>	<i>9.13</i>	<i>1.14</i>	<i>4.83</i>	<i>6.23</i>
2015	사건수	1,147	333	440	93	101	102	5	30	43
	비율	<i>100.00</i>	<i>29.03</i>	<i>38.36</i>	<i>8.11</i>	<i>8.81</i>	<i>8.89</i>	<i>0.44</i>	<i>2.62</i>	<i>3.75</i>
2016	사건수	1,511	628	329	101	93	247	7	62	44
	비율	<i>100.00</i>	<i>41.56</i>	<i>21.77</i>	<i>6.68</i>	<i>6.15</i>	<i>16.35</i>	<i>0.46</i>	<i>4.10</i>	<i>2.91</i>
2017	사건수	1,428	421	578	97	98	102	12	52	68
	비율	<i>100.00</i>	<i>29.48</i>	<i>40.48</i>	<i>6.79</i>	<i>6.86</i>	<i>7.14</i>	<i>0.84</i>	<i>3.64</i>	<i>4.76</i>
2018	사건수	1,102	304	403	93	79	126	13	22	62
	비율	<i>100.00</i>	<i>27.59</i>	<i>36.57</i>	<i>8.44</i>	<i>7.17</i>	<i>11.43</i>	<i>1.18</i>	<i>2.00</i>	<i>5.63</i>
등록 장애인 구성비 ¹⁾	인원 (천명)	2,546	1,254	253	253	302	226	20	102	136
	비율	<i>100.0</i>	<i>49.3</i>	<i>9.9</i>	<i>9.9</i>	<i>11.9</i>	<i>8.9</i>	<i>0.8</i>	<i>4.0</i>	<i>5.4</i>

1) 등록 장애인 구성비: 2017. 12. 기준(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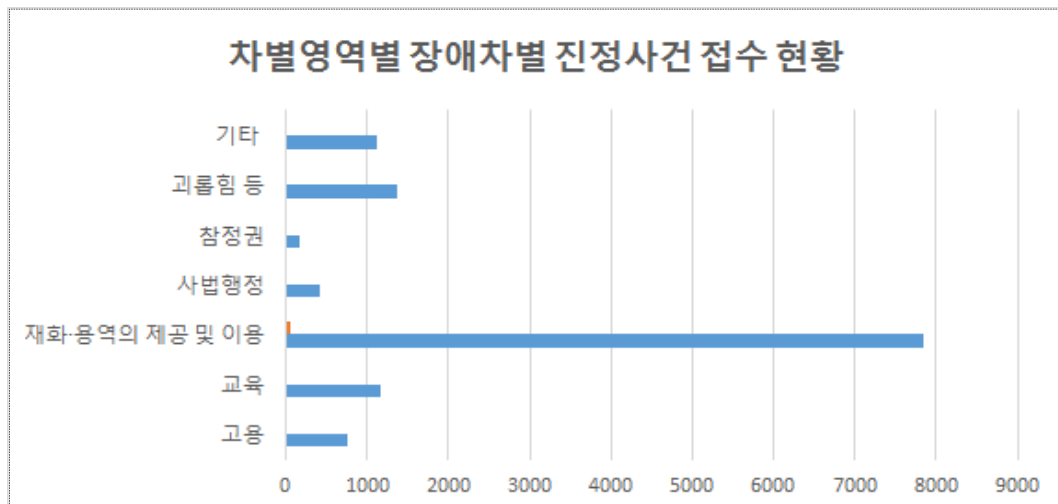
[그림 4]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7.12.31.)

라.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8.12.31.)

(단위: 건, %)

접수 년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								사법 행정	참정 권	괴롭 힘 등	기타
				소계	재화 · 용역	보험 · 금융	시설 물접 근	이동 교통 수단	정보 접근 · 의사 소통	문화 · 예술 · 체육	기타				
전체	12,870	769	1,173	7,832	2,098	754	1,548	987	1,934	342	169	427	178	1,372	1,119
	100.0	5.98	9.11	60.8	16.3	5.86	12.0	7.67	15.0	2.66	1.31	3.32	1.38	10.6	8.70
2008	585	41	61	347	26	49	78	128	35	20	11	44	11	42	39
	100.0	7.01	10.4	59.3	4.44	8.38	13.3	21.8	5.98	3.42	1.88	7.52	1.88	7.18	6.67
2009	725	69	49	412	150	91	93	49	13	13	3	39	3	105	48
	100.0	9.52	6.76	56.8	20.6	12.5	12.8	6.76	1.79	1.79	0.41	5.38	0.41	14.4	6.62
2010	1,695	82	55	1,26	286	65	263	103	506	36	10	26	13	176	74
	100.0	4.84	3.24	74.8	16.8	3.83	15.5	6.08	29.8	2.12	0.59	1.53	0.77	10.4	4.37
2011	886	64	62	487	164	70	67	67	45	59	15	77	3	105	88
	100.0	7.22	7.00	54.9	18.5	7.90	7.56	7.56	5.08	6.66	1.69	8.69	0.34	11.8	9.93
2012	1,340	82	96	808	175	153	252	40	42	133	13	36	57	111	150
	100.0	6.12	7.16	60.3	13.0	11.4	18.8	2.99	3.13	9.93	0.97	2.69	4.25	8.28	11.19

접수 년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								사법 행정	참정 권	괴롭 힘 등	기타
				소계	재화 · 용역	보험 · 금융	시설 물접 근	이동 교통 수단	정보 접근 · 의사 소통	문화 · 예술 · 체육	기타				
2013	1,312	75	45	706	132	55	128	49	307	13	22	30	41	303	112
	100.0	5.72	3.43	53.8	10.1	4.19	9.76	3.73	23.4	0.99	1.68	2.29	3.13	23.1	8.54
2014	1,139	94	66	677	172	62	142	108	166	19	8	42	19	123	118
	100.0	8.25	5.79	59.4	15.1	5.44	12.5	9.48	14.5	1.67	0.70	3.69	1.67	10.8	10.36
2015	1,147	69	55	733	120	82	125	99	286	12	9	38	-	121	131
	100.0	6.02	4.80	63.9	10.5	7.15	10.9	8.63	24.9	1.05	0.78	3.31	-	10.5	11.42
2016	1,511	56	536	643	242	48	117	58	161	8	9	46	16	88	126
	100.0	3.71	35.5	42.5	16.0	3.18	7.74	3.84	10.6	0.53	0.60	3.04	1.06	5.82	8.34
2017	1,428	80	90	994	393	46	137	215	168	7	28	27	4	91	142
	100.0	5.60	6.30	69.6	27.5	3.22	9.59	15.0	11.8	0.49	1.96	1.89	0.28	6.37	9.94
2018	1,102	57	58	756	238	33	146	71	205	47	16	22	11	107	91
	100.0	5.17	5.26	68.6	21.6	2.99	13.2	6.44	18.6	4.27	1.45	2.00	1.00	9.71	8.26



[그림 5]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8.12.31.)

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후 차별영역별 월평균 진정사건 증감 추이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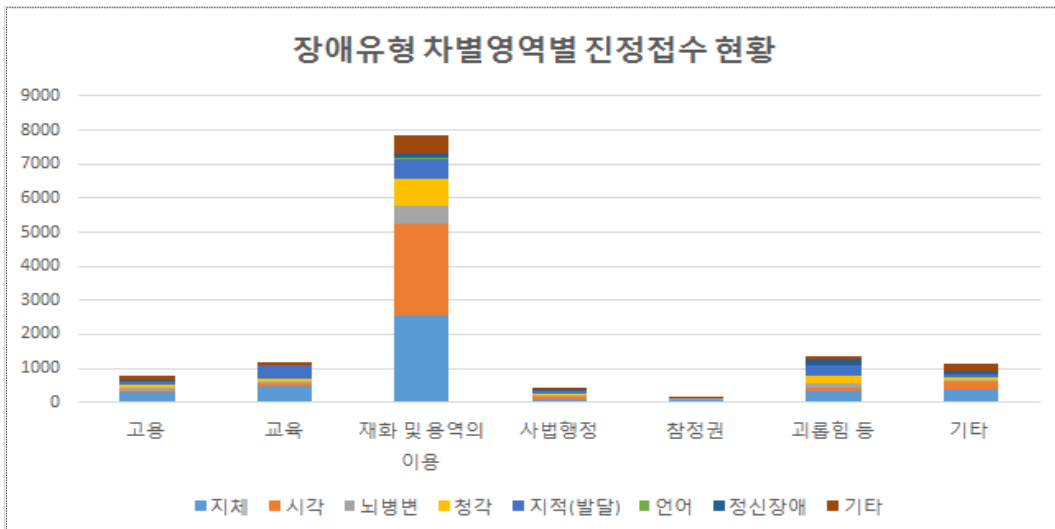
구분		2001. 11.25. ~ 2008.4. .10.	2008. 4.11. ~ 2008. 12.31.	2009. 1. 1. ~ 2009. 12.31.	2010. 1. 1. ~ 2010. 12.31.	2011. 1. 1. ~ 2011. 12.31.	2012. 1. 1. ~ 2012. 12.31.	2013. 1. 1. ~ 2013. 12.31.	2014. 1. 1. ~ 2014. 12.31.	2015. 1. 1. ~ 2015. 12.31.	2016. 1. 1. ~ 2016. 12.31.	2017. 1. 1. ~ 2017. 12.31.	2018. 1.1.~2 018.1 2.31.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 11년 (2008. 4~ 2018. 12.)
합계	전체 건수	653	585	725	1,695	886	1,340	1,312	1,139	1,147	1,511	1,428	1,102	12,870
	월평균	8.4	67.2	60.4	141.3	73.8	111.7	109.3	94.9	95.6	125.9	119	91.8	100.5
고용	전체 건수	153	41	69	82	64	82	75	94	69	56	80	57	769
	월평균	2	4.7	5.8	6.8	5.3	6.8	6.3	7.8	5.8	4.7	6.8	4.7	6.0
교육	전체 건수	122	61	49	55	62	96	45	66	55	536	90	58	1,173
	월평균	1.6	7.0	4.1	4.6	5.2	8	3.8	5.5	4.6	44.7	7.5	4.8	9.1
재화·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전체 건수	207	347	412	1,269	487	808	706	677	733	643	994	756	7,832
	월평균	2.7	39.9	34.3	105.8	40.6	67.3	58.8	56.4	61.1	53.6	82.8	63.0	61.2
사법· 행정 /참정 권	전체 건수	-	55	42	39	80	93	71	61	38	62	31	33	605
	월평균	-	6.3	3.5	3.3	6.7	7.8	5.9	5.1	3.2	5.2	2.6	2.75	4.7
괴롭힘 · 기타	전체 건수	171	81	153	250	193	261	415	241	252	214	233	198	2,491
	월평균	2.2	9.3	12.8	20.8	16.1	21.8	34.6	20.1	21	17.8	19.4	16.5	19.5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과 '사법·행정 및 참정권'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해당기간 동안(2001.11.25.~2008.4.10.)의 사건 접수 건수를 모두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에 포함함.

바.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8.12.31.)

(단위: 건)

사건유형	총합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지적(발달)	언어	정신장애	기타	
소계	12,870	4,125	3,277	931	1,314	1,521	98	498	1,106	
고용	769	276	76	63	120	64	15	46	109	
교육	1,173	452	89	63	98	373	8	15	75	
재화· 용역	소계	7,832	2,538	2,690	558	764	586	40	145	511
	재화·용역	2,098	583	695	210	151	254	17	64	124
	보험·금융	754	164	157	74	137	107	9	59	47
	시설물접근	1,548	1,070	212	131	16	16	2	5	96
	이동교통수단	987	536	188	86	27	44	5	2	99
	정보접근·의사소통	1,934	44	1,369	17	361	27	6	2	108
	문화·예술·체육	342	75	29	20	65	122	-	9	22
	기타	169	66	40	20	7	16	1	4	15
사법행정	427	82	91	23	51	78	5	50	47	
참정권	178	60	35	8	8	8	-	3	56	
괴롭힘 등	1,372	345	82	130	220	308	17	158	112	
기타	1,119	372	214	86	53	104	13	81	194	



[그림 6] 장애유형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8.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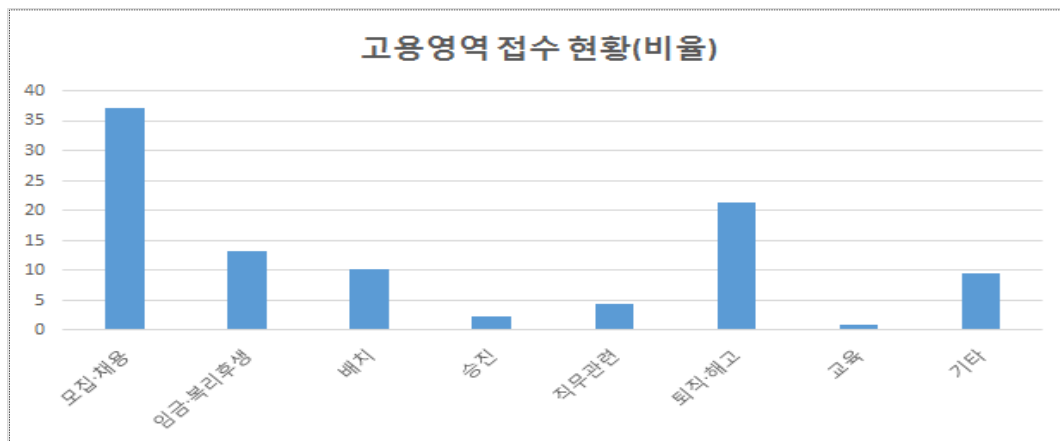
Ⅲ. 진정사건 접수 : 장애 차별 영역별 세부 유형

가. 고용 영역(2008.4.11.~2018.12.31.)

(단위: 건, %)

접수 년도	공사 구분	고용								
		합계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배치	승진	직무 관련	퇴직· 해고	교육	기타
합계		769	287	103	79	18	34	166	8	74
		100.00	37.3	13.3	10.2	2.3	4.4	21.5	1.0	9.6
2008	합계	41	19	5	6	1	-	8	1	1
		100.0	46.3	12.2	14.6	2.4	-	19.5	2.4	2.4
	공공	18	11	1	2	1	-	1	1	1
	사적	23	8	4	4	-	-	7	-	-
2009	합계	69	30	12	6	2	1	16	1	1
		100.0	43.4	17.3	8.7	2.9	1.4	23.1	1.4	1.4
	공공	20	11	-	5	1	-	2	-	1
	사적	49	19	12	1	1	1	14	1	-
2010	합계	82	27	12	13	3	3	15	-	9
		100.0	32.9	14.6	15.8	3.6	3.6	18.2	-	10.9
	공공	30	11	-	8	3	1	4	-	3
	사적	52	16	12	5	-	2	11	-	6
2011	합계	64	23	10	4	1	-	17	1	8
		100.0	35.9	15.6	6.2	1.5	-	26.5	1.5	12.5
	공공	14	8	-	-	-	-	2	1	3
	사적	50	15	10	4	1	-	15	-	5
2012	합계	82	33	10	5	1	5	20	-	8
		100.0	40.2	12.2	6.1	1.2	6.1	24.3	-	9.7
	공공	34	18	4	2	1	2	4	-	3
	사적	48	15	6	3	-	3	16	-	5
2013	합계	75	28	10	6	1	1	17	-	12
		100.0	37.3	13.3	8.0	1.3	1.3	22.6	-	16.0
	공공	29	15	1	4	1	-	2	-	6
	사적	46	13	9	2	-	1	15	-	6

접수 년도	공사 구분	고용								
		합계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배치	승진	직무 관련	퇴직· 해고	교육	기타
2014	합계	94	38	11	11	3	5	22	-	4
		100.0	40.4	11.7	11.7	3.1	5.3	23.4	-	4.2
	공공	24	16	1	4	2	-	1	-	-
	사적	70	22	10	7	1	5	21	-	4
2015	합계	69	20	8	3	1	9	14	-	14
		100.0	28.9	11.5	4.3	1.4	13.0	20.2	-	20.2
	공공	18	11	-	2	1	2	-	-	2
	사적	51	9	8	1	-	7	14	-	12
2016	합계	56	27	5	5	2	2	12	-	3
		100.0	48.2	8.9	8.9	3.5	3.5	21.4	-	5.3
	공공	24	16	-	2	1	1	2	-	2
	사적	32	11	5	3	1	1	10	-	1
2017	합계	80	17	13	13	1	4	18	4	10
		100.0	21.2	16.2	16.2	1.2	5.0	22.5	5.0	12.5
	공공	28	11	3	5	1	2	2	2	2
	사적	52	6	10	8	-	2	16	2	8
2018	합계	57	25	7	7	2	4	7	1	4
		100.0	43.8	12.2	12.2	3.5	7.0	12.2	1.7	7.0
	공공	21	12	-	4	2	2	-	-	1
	사적	36	13	7	3	-	2	7	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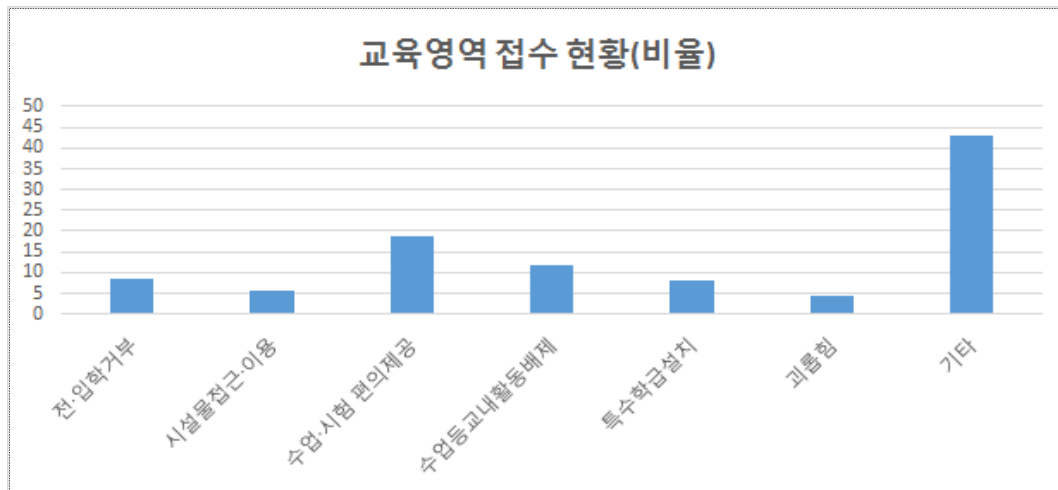
[그림 7] 고용영역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8.12.31.)

나. 교육 영역(2008.4.11.~2018.12.31.)

(단위: 건, %)

접수 년도	공사 구분	교육							
		합계	전·입학 거부	시설물 접근·이용	수업·시험 편의제공	수업등교내 활동배제	특수학급 설치	괴롭힘	기타
합계		1,173	98	65	220	140	93	50	507
		100.0	8.35	5.54	18.76	11.94	7.93	4.26	43.1
2008	합계	61	9	14	14	7	6	3	8
		100.0	14.75	22.95	22.95	11.48	9.84	4.92	13.11
	공공	34	6	7	5	5	5	1	5
	사적	27	3	7	9	2	1	2	3
2009	합계	49	16	2	8	13	1	3	6
		100.0	32.65	4.08	16.33	26.53	2.04	6.12	12.24
	공공	28	7	2	4	8	1	2	4
	사적	21	9	-	4	5	-	1	2
2010	합계	55	4	10	12	6	4	7	12
		100.0	7.27	18.18	21.82	10.91	7.27	12.73	21.82
	공공	35	-	1	6	5	4	7	12
	사적	20	4	9	6	1	-	-	-
2011	합계	62	10	6	7	1	3	-	35
		100.0	16.13	9.68	11.29	1.61	4.84	-	56.45
	공공	43	6	5	1	-	3	-	28
	사적	19	4	1	6	1	-	-	7
2012	합계	96	9	2	13	3	51	2	16
		100.0	9.38	2.08	13.54	3.13	53.13	2.08	16.67
	공공	79	3	1	9	2	51	2	11
	사적	17	6	1	4	1	-	-	5
2013	합계	45	9	7	6	3	7	2	11
		100.0	20.00	15.56	13.33	6.67	15.56	4.44	24.44
	공공	30	2	6	6	3	5	2	6
	사적	15	7	1	-	-	2	-	5
2014	합계	66	6	10	17	2	10	8	13
		100.0	9.09	15.15	25.76	3.03	15.15	12.12	19.70
	공공	44	3	6	8	1	10	5	11
	사적	22	3	4	9	1	-	3	2

접수 년도	공사 구분	교육							
		합계	전·입학 거부	시설물 접근·이용	수업·시험 편의제공	수업등교내 활동배제	특수학급 설치	괴롭힘	기타
2015	합계	55	5	1	15	4	3	7	20
		100.0	9.09	1.82	27.27	7.27	5.45	12.73	36.36
	공공	42	3	-	7	4	3	7	18
	사적	13	2	1	8	-	-	-	2
2016	합계	536	4	6	81	88	1	4	352
		100.0	0.75	1.12	15.11	16.42	0.19	0.75	65.67
	공공	526	3	5	80	87	1	-	350
	사적	10	1	1	1	1	-	4	2
2017	합계	90	19	3	32	7	2	6	21
		100.0	21.11	3.33	35.56	7.78	2.22	6.67	23.3
	공공	77	18	2	30	6	2	5	14
	사적	13	1	1	2	1	-	1	7
2018	합계	58	7	4	15	6	5	8	13
		100.0	12.07	6.90	25.86	10.34	8.62	13.79	22.3
	공공	45	6	2	11	4	5	7	10
	사적	13	1	2	4	2	-	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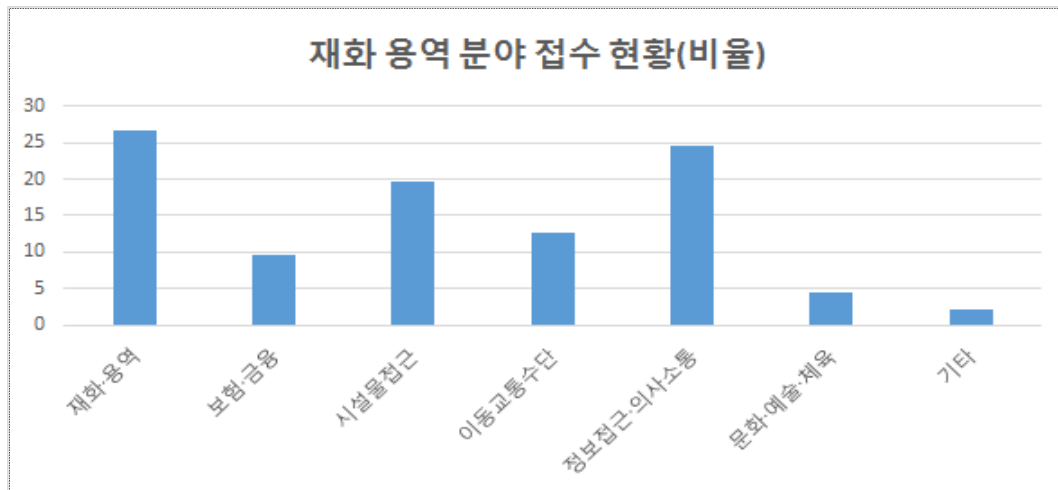
[그림 8] 교육영역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8.12.31.)

다. 재화·용역 영역(2008.4.11.~2018.12.31.)

(단위: 건, %)

접수 년도	공사 구분	재화·용역							
		합계	재화·용역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교통 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기타
합계		7,832	2,098	754	1,548	987	1,934	342	169
		100.00	26.79	9.63	19.77	12.60	24.69	4.37	2.10
2008	합계	347	26	49	78	128	35	20	11
		100.00	7.49	14.12	22.48	36.89	10.09	5.76	3.17
	공공	140	3	5	26	83	9	8	6
	사적	207	23	44	52	45	26	12	5
2009	합계	412	150	91	93	49	13	13	3
		100.00	36.41	22.09	22.57	11.89	3.16	3.16	0.73
	공공	154	64	7	33	36	4	8	2
	사적	258	86	84	60	13	9	5	1
2010	합계	1,269	286	65	263	103	506	36	10
		100.00	22.54	5.12	20.72	8.12	39.87	2.84	0.79
	공공	762	208	6	181	71	269	24	3
	사적	507	78	59	82	32	237	12	7
2011	합계	487	164	70	67	67	45	59	15
		100.00	33.68	14.37	13.76	13.76	9.24	12.11	3.08
	공공	212	72	4	23	34	26	45	8
	사적	275	92	66	44	33	19	14	7
2012	합계	808	175	153	252	40	42	133	13
		100.00	21.66	18.94	31.19	4.95	5.20	16.46	1.61
	공공	353	77	9	119	27	15	100	6
	사적	455	98	144	133	13	27	33	7
2013	합계	706	132	55	128	49	307	13	22
		100.00	18.70	7.79	18.13	6.94	43.48	1.84	3.12
	공공	175	47	7	39	28	45	4	5
	사적	531	85	48	89	21	262	9	17
2014	합계	677	172	62	142	108	166	19	8
		100.00	25.41	9.16	20.97	15.95	24.52	2.81	1.18
	공공	224	64	8	49	43	48	9	3
	사적	453	108	54	93	65	118	10	5

접수 년도	공사 구분	재화·용역							
		합계	재화·용역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교통 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기타
2015	합계	733	120	82	125	99	286	12	9
		100.00	16.37	11.19	17.05	13.51	39.02	1.64	1.23
	공공	188	36	8	38	35	65	4	2
	사적	545	84	74	87	64	221	8	7
2016	합계	643	242	48	117	58	161	8	9
		100.00	37.64	7.47	18.20	9.02	25.04	1.24	1.40
	공공	208	84	9	45	39	27	1	3
	사적	435	158	39	72	19	134	7	6
2017	합계	994	393	46	137	215	168	7	28
		100.00	39.54	4.63	13.78	21.63	16.90	0.70	2.80
	공공	575	277	4	44	186	50	3	11
	사적	419	116	42	93	29	118	4	17
2018	합계	756	238	33	146	71	205	22	41
		100.00	31.48	4.37	19.31	9.39	27.12	2.91	5.40
	공공	323	91	5	82	41	67	13	24
	사적	433	147	28	64	30	138	9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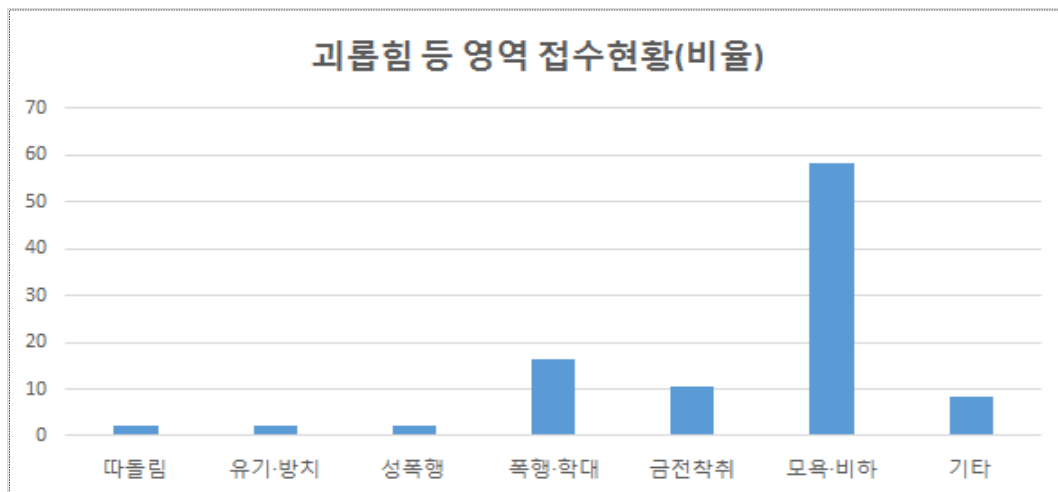
[그림 8] 재화 용역 영역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8.12.31.)

라. 괴롭힘 등 영역(2008.4.11.~2018.12.31.)

(단위: 건, %)

접수 년도	공사 구분	괴롭힘 등							
		합계	따돌림	유기·방치	성폭행	폭행·학대	금전 착취	모욕·비하	기타
합계	합계	1,372	28	32	29	225	146	798	114
		100.00	2.04	2.33	2.11	16.40	10.64	58.16	8.20
	공공	230	7	3	4	38	5	149	24
	사적	1,142	21	29	25	187	141	649	90
2008	합계	42	-	-	3	5	7	26	1
		100.00	-	-	7.14	11.90	16.67	61.90	2.38
	공공	2	-	-	-	-	1	-	1
	사적	40	-	-	3	5	6	26	-
2009	합계	105	1	4	6	19	16	53	6
		100.00	0.95	3.81	5.71	18.10	15.24	50.48	5.71
	공공	18	1	-	-	4	-	12	1
	사적	87	-	4	6	15	16	41	5
2010	합계	176	3	10	2	40	23	77	21
		100.00	1.70	5.68	1.14	22.73	13.07	43.75	11.93
	공공	32	1	1	-	6	1	16	7
	사적	144	2	9	2	34	22	61	14
2011	합계	105	4	4	-	22	16	50	9
		100.00	3.81	3.81	-	20.95	15.24	47.62	8.57
	공공	19	-	1	-	4	1	12	1
	사적	86	4	3	-	18	15	38	8
2012	합계	111	4	4	1	22	18	50	12
		100.00	3.60	3.60	0.90	19.82	16.22	45.05	10.81
	공공	17	1	-	-	2	-	13	1
	사적	94	3	4	1	20	18	37	11
2013	합계	303	5	2	5	24	19	233	15
		100.00	1.65	0.66	1.65	7.92	6.27	76.90	4.95
	공공	16	1	-	2	1	-	10	2
	사적	287	4	2	3	23	19	223	13
2014	합계	123	2	3	6	17	20	67	8
		100.00	1.63	2.44	4.88	13.82	16.26	54.47	6.50
	공공	18	2	-	2	4	2	8	-
	사적	105	-	3	4	13	18	59	8

접수 년도	공사 구분	괴롭힘 등							
		합계	따돌림	유기·방치	성폭행	폭행·학대	금전 착취	모욕·비하	기타
2015	합계	121	2	3	1	23	10	72	10
		100.00	1.65	2.48	0.83	19.01	8.26	59.50	8.26
	공공	22	-	-	-	3	-	17	2
	사적	99	2	3	1	20	10	55	8
2016	합계	88	1	-	3	20	3	50	11
		100.00	1.14	-	3.41	22.73	3.41	56.82	12.50
	공공	19	-	-	-	5	-	10	4
	사적	69	1	-	3	15	3	40	7
2017	합계	91	4	2	1	17	12	50	5
		100.00	4.40	2.20	1.10	18.68	13.19	54.95	5.50
	공공	19	1	1	-	6	-	10	1
	사적	72	3	1	1	11	12	40	4
2018	합계	107	2	-	1	16	2	70	16
		100.00	1.87	-	0.93	14.95	1.87	65.42	14.90
	공공	48	-	-	-	3	-	41	4
	사적	59	2	-	1	13	2	29	12



[그림 8] 괴롭힘 등 영역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8.12.31.)

IV. 진정사건 처리 :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가.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11.25.~2018.12.31.)(단위: 건)

합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3,063	22	18	39	116	90	255	455	721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101	952	1,508	1,563	1,096	1,085	1,640	1,086	1,316



[그림 8]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11.25.~2018.12.31.)

나. 장애차별 진정사건 세부처리 현황(2008.4.11.~2018.12.31.)

1) 종결 현황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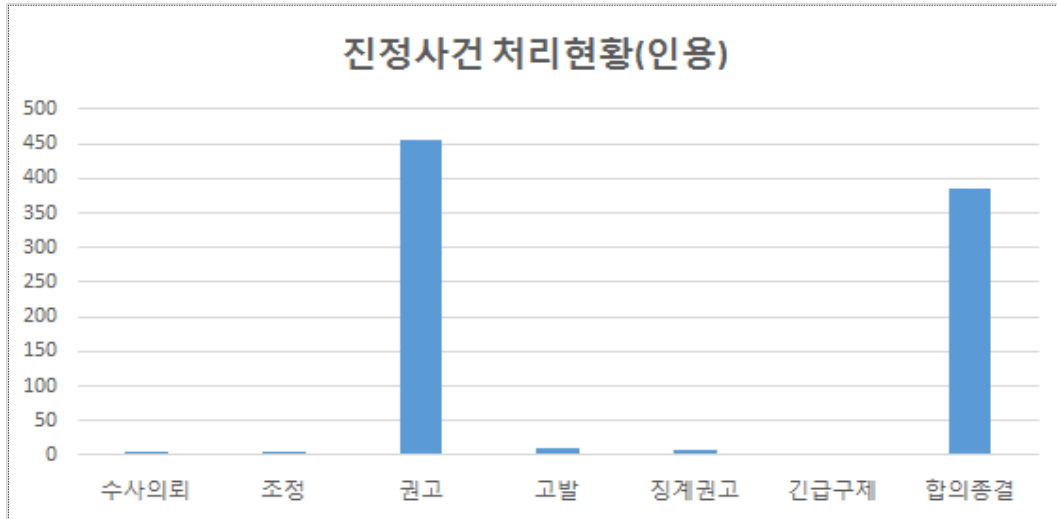
종료 년도	합계	인용								미인용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긴급 구제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합계	12,481	870	4	5	456	11	8	1	385	11,605	6,815	49	4,729	18
2008	413	34	-	-	22	-	-	-	12	379	221	-	157	1
2009	721	57	-	-	10	-	-	-	47	664	353	6	301	4
2010	1,101	85	-	1	25	3	-	-	56	1,016	663	15	332	6
2011	952	156	1	-	119	4	-	-	32	796	381	4	410	1
2012	1,508	136	1	-	115	-	-	-	20	1,371	616	1	754	1
2013	1,563	108	-	-	27	1	1	-	79	1,455	755	1	699	-
2014	1,096	79	-	1	15	2	-	-	61	1,014	560	5	449	3
2015	1,085	36	-	-	14	-	3	-	19	1,049	663	6	380	-
2016	1,640	51	-	3	19	-	-	-	29	1,589	1,199	7	383	-
2017	1,086	91	-	-	67	1	2	-	21	993	628	4	361	4
2018	1,316	37	2	-	23	-	2	1	9	1,279	776	-	503	-

* 조정: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기각 처리한 경우임.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그림 9] 진정사건 처리 현황(인용)(2001.11.25.~2018.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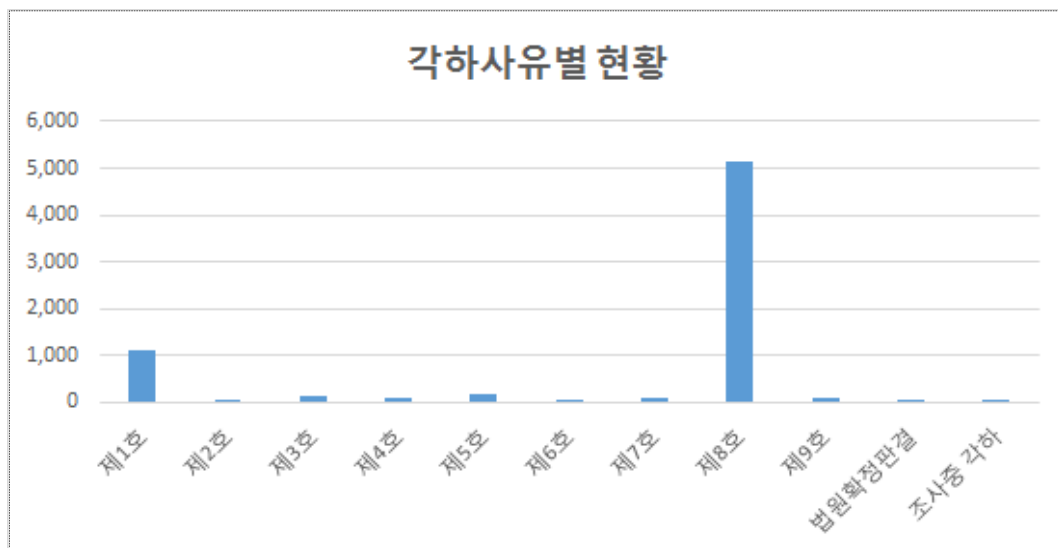
2) 각하 사유별 현황

종료 년도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법원확 정판결	조사중 각하
합계	6,815	1,095	32	133	83	150	10	70	5,128	96	6	12
2008	221	54	1	6	11	2	1	2	139	5	-	-
2009	353	56	-	9	5	14	1	10	238	19	1	-
2010	663	227	2	10	19	16	-	6	369	13	1	-
2011	381	94	3	7	4	17	1	7	228	17	3	-
2012	616	62	3	14	9	16	4	9	495	3	-	1
2013	755	215	5	37	2	20	-	6	459	9	1	1
2014	560	52	3	8	11	17	1	2	452	10	-	4
2015	663	49	1	8	7	14	1	12	561	8	-	2
2016	1,199	101	12	11	4	16	-	3	1,048	3	-	1
2017	628	60	1	11	7	12	1	5	525	5	-	1
2018	776	125	1	12	4	6	-	8	614	4	-	2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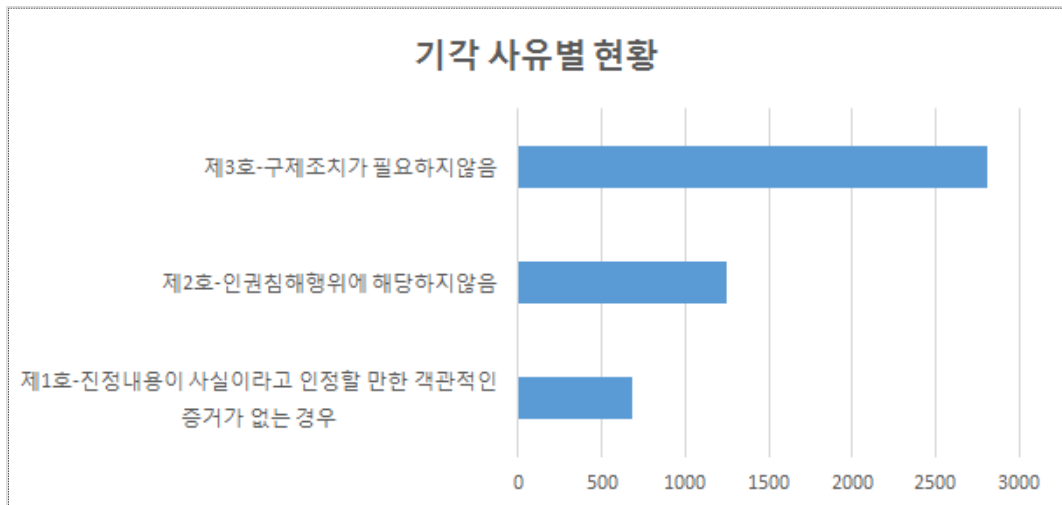
**조사 중 각하(제32조 제3항)



[그림 10] 진정사건 처리 현황(각하)(2001.11.25.~2018.12.31.)

3) 기각사유별 현황

종료년도	소계	제1호-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제2호-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않음	제3호-구제조치가 필요하지않음
합계	4,729	679	1,243	2,807
2008	157	20	56	81
2009	301	39	107	155
2010	332	61	94	177
2011	410	59	146	205
2012	754	74	115	565
2013	699	62	102	535
2014	449	86	123	240
2015	380	62	139	179
2016	383	66	119	198
2017	361	81	113	167
2018	503	69	129	305



[그림 11] 진정사건 처리 현황(기각)(2001.11.25.~2018.12.31.)

붙임1 : 장애 관련 직권조사 처리 현황

연번	사건번호	사 건 명
1	10-직권-0001300	○○농아원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	11-직권-0000200	○○학교 교사의 시각장애여학생 안마강요 등에 대한 직권조사
3	11-직권-0000700	선주의 지적장애인 괴롭힘(금전착취 등)에 대한 직권조사
4	11-직권-0001500	지적장애아동 괴롭힘 등에 대한 직권조사
5	11-직권-0001700	사회복지법인 ○○의 장애인 차별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6	11-직권-0002300	사회복지법인 ○○의 장애인 폭력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7	12-직권-0000700	중증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8	12-직권-0000800	○○특수학교에 대한 직권조사
9	12-직권-0000900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및 폭행에 대한 직권조사
10	12-직권-0001000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11	12-직권-0001100	입양된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2	12-직권-0001400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3	12-직권-0001700	장애인체육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4	13-직권-0000400	무연고 지적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5	13-직권-0000500	장애인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6	13-직권-0000600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17	13-직권-0002400	사회복지법인 ○○내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8	14-직권-0000100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인 강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19	14-직권-0001100	장애인 거주시설의 폭행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20	14-직권-0001700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직권조사
21	14-직권-0001900	지적 장애인 시설 거주자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2	15-직권-0001300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직권조사
23	15-직권-0000900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직권조사
24	15-직권-0001500	지적장애인 시설 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5	15-직권-0001800	장애인거주시설 내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26	16-직권-0001700	다수인보호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27	16-직권-0002400	보호사의 환자 폭행에 대한 직권조사
28	17-직권-0000400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내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9	17-직권-0001300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폭행 및 학대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30	18-직권-0001900	○○○○학교 학생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붙임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 관련 사업 및 정책 권고·의견 표명 (2008년~2018년)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1	장애인차별금지법 기념 토론회 개최 (2009~201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와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법의 실효적 이행을 도모하는 계기 마련
2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실시 (2009~2018)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차별영역을 중심으로 생활 속 장애차별 사례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피모니터링기관에 송부하여 즉각적인 개선 유도 및 정책과제 발굴
3	정당한 편의제공 판단기준 연구 (2009~2012)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의 이용, 사법·행정절차, 인적서비스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편의제공 판단기준 연구
4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독점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2008)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사 자격 독점권 부여제도는 현존하는 차별로부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잠정적이고, 위급하고,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안마사업에 대한 시각장애인 독점 조항은 합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표명
5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발간 및 정책권고 (2009)	정신보건시설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마련, 정신보건시설 내 권리보장 및 치료환경 개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치료,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간 및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6	시각장애인 참정권 차별개선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 (2010)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책자형 선거공보 제작 시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의무화하는 등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의견 표명
7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활동보조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중증장애인 개념 명시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도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격을 부여할 것,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대상 및 서비스 인정시간을 확대하고 장애등급 심사비용을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의견 표명
8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박은수의원)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모니터링센터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태료 규정은 그 부과의 주체 및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
9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의 기술 내용이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부합하도록 장애인의 법적능력, 자립생활지원, 접근성 제고, 고용과 노동, 교육 등에 통계자료를 추가하고, 협약 이행의 문제점과 장애요소 등을 추가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표명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10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2011)	시설물 건축에 대한 건축절차와, 편의증진법과 건축 간의 관계 검토를 통하여 현행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 등을 제공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보완점 등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1	은행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정책권고 (2011)	은행 시설물, 금융자동화기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금융위원회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국은행연합회장 및 10개 은행장에게 권고
12	중장기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권고 (2012)	장애인 관련 주요 정부정책 및 법령 분석, 장애인 인권증진 및 차별시정을 위한 분야별 정책 의제 발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새로운 인권적 요구에 부합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및 연차별 행동 계획을 마련하여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3	장애차별 보험 가이드라인 작성 및 권고 (2012)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보험가입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권고
14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에 대한 권고 (2013)	후견심판절차에서 사건 본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사건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키며, 후견사무의 감독을 위해 가사조사관 등 필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사소송규칙」에 후견인의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할 것 등을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5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권고 (2013)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및 환경에 기반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반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활성화 및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실화,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급여수준 현실화, 「장애인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택법」 등에 의거하여 장애를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건설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전세주택제공사업 도입하고,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 보조금고용제도를 도입할 것 등을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
16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 증진을 위한 「도로법」 개정 권고 (2013)	‘소규모 상가 앞 경사로’가 도로 점용허가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여 법령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을 개정하고, ‘소규모 상가 앞 경사로’ 설치에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 증진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도로법」 제42조에 근거조항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
17	법무사 자격시험 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개선권고 (2013)	대법원이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은 약시인 시각장애인과는 달리 전맹인 시각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18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배제에 대한 정책권고 (2013)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상위 법령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편의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안정행정부장관에게 권고
19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3)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절차 및 계속입원심사를 일원화, 입원연장 3회 이상시 광역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강화, 공적기관에 의한 이송 의무화 및 위반 시 벌칙조항 신설, 격리, 강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정신건강증진시설 출입 및 환자 면담에 관한 사항을 의무조항”으로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표명
20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내부 안전장치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2014)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한 특별교통수단 내부의 안전장치(휠체어 고정장치 및 휠체어 사용 탑승자용 안전벨트 등)의 구조·재질·안전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과 △특별교통수단 운행권자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해 안전 사고 관련 사례교육, 안전장치 착용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제반 안전 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
21	시각장애인 제1종 운전면허 취득제한 관련 정책 개선 권고(2014)	최소 시력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
22	장애인관람석 설치기준의 장애인 관람편리성 제고 권고(201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의[별표1]의 “20.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관람석또는열람석”의 가항을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다른 관람석 또는 열람석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곳에, 동행한사람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하며,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2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2두20991)에 대한 의견제출(2014)	대법원에 계류 중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2012두20991)”에 대한 재판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 대법원 2012두20991사건(서울고등법원 2012누6836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의족 등 보조기구에 의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의족이 업무 중 파손되었을 경우, 의족은 생물학적 신체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24	언론매체의 장애비하표현에 대한 개선 의견표명(2014)	방송, 신문 등의 언론매체에서 장애인을 비하할 소지가 있는 용어나 관용구가 사용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주의를 기울일 것을 의견으로 표명함.
25	장애인 인권 상황 실태조사 실시 (2009~2018)	<p>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2009),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적 이행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2010),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실태조사(2010),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2011), 장애유형별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2011),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인적 편의제공에 관한 연구(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영역분류를 기준으로 한 외국판례 연구(2011),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2012),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장애인정책 현황 및 문제점 실태조사(2012),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2012), 한국과 일본의 자립생활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적 자립생활 정착방안 연구(2012),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외국사례 및 정책 연구를 통한 선진모델 구축(2012), 정신장애인 차별·편견해소를 위한 실태조사(2012),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2013), 장애인노동권 보장을 위한 전달체계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2013), 공공조달을 통한 보편적 설계제품의 확산 연구(201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증진 및 개선을 위한 연구(2014), 장애인주거지원제도 실태 및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2014), 특수학급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실태 및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2014), 중증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2014), 거주시설 종사자 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4), 시설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2014),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5), 장애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5), 정신병원 격리·강박 피해 실태조사(2015),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인권상황 실태조사(2015), 일정기준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 실태조사(2016),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6),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해외사례 비교연구(2016),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2016),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2017),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차별 실태조사(2017), 정신보건시설의 정신장애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7),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2017),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2018),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2018), 장애인 모부성권 증진 실태조사(2018)</p>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26	<p>각종 토론회 및 국제심포지엄 등 개최 (2009~2018)</p>	<p>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보장 방안 토론회(2009),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토론회(2009), 장애인권리협약 한·일 국제심포지엄(2009), 아·태지역의 장애인권리협약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2010), 장애인권리협약 정보접근권 관련 국제심포지엄(2011),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및 편견해소 캠페인(2009~2012), 발달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인권세미나(2013),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 후견제 국제컨퍼런스(2013),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보고서 공청회(201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2014),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민사·가사재판 참여권 및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학술대회(2014), 장애인 건강권 증진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2014),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201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2015), 시청각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2015), 장애인 권리옹호계 확립을 위한 현황과 과제 토론회(2016),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제고를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2016),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제심포지엄(2016),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2016), 탈시설 세부이행 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회(2016), 장애여성 차별 시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2016),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기념 지역순회 토론회(2017),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국제심포지엄(2017),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2017),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2018), 「중증·중복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2018), 장애인 관광활동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토론회(2018), 공공기관의 고용차별 개선 정책권고를 위한 토론회(2018),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장차법 시행 10주년 기념)(2018), 「정신의료기관의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2018)</p>
27	<p>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5)</p>	<p>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발달장애인법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함.</p>
28	<p>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 수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15)</p>	<p>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 수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함.</p>
29	<p>고속·시외버스 이용에 있어 장애인차별 관련 정책권고 (2015)</p>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함</p>
30	<p>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의 교육기회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2015)</p>	<p>교육부장관에게 학령기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과 교육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평생교육시설과 과정을 확충할 것을 권고함</p>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31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15)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및 차별에 대한 대책으로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장애인 전문가참여 등 6개 과제, 교육부장관에게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활동강화 등 6개 과제,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특수교육교원 증원과 법정 정원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권고함
32	「장애인 시설 건립 반대」에 대한 의견표명(2015)	장애인직업센터 설립 반대 위원회가 지역 내 장애인 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장애인 차별행위' 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서울특별시장과 동대문구청장은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애인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의견으로 표명함
33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 개선 정책권고(2016)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양팔이 절단된 장애인을 「장애등급판정기준」상의 '보행상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대상자에 포함할 것을 권고
34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권고(2016)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교통부장관, 휠체어 승강설비를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없는 공항에는 대체할 휠체어 승강설비와 필요한 인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각 항공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항공기 탑승 시 진단서, 의사소견서, 항공사 면책서약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2.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탑승교와 항공기가 연결되는 부분의 높낮이 차를 제거 3. 한국공항공사 사장, 여객탑승교를 설치할 수 없는 공항에 이를 대체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기 바람 4.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및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장애인 이동을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인적 서비스를 제공 5. 각 국적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관련 업무 담당 인권교육 실시, 휠체어 승강설비를 대여하며, 공항시설이용 등에 필요한 인적 서비스를 제공,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을 통해 제공하는 항공기 이용 관련 정보를 접근·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 항공사에 사전에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항공사 면책서약서 등을 요구하지 말고, 상반신 고정용 안전벨트와 기내휠체어를 비치하기 바람
35	정신병원의 격리 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권고(2016)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환자의 격리 및 강박 조치에 있어서 아래의 요소를 포함한 법령 강화. 격리·강박의 목적과 원칙/정신건강의학과전문이에 의한 지시/격리·강박 명부 작성과 비치 의무화/격리·강박과 관련된 구체적 조건과 절차(해제조건, 시간제한, 연장에 대한 절차, 이유 등의 고지, 관찰 등) 2. 화학적 강박을 포함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약물투여 실태조사 실시 3. 격리실의 구조와 설비, 강박도구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와 표준화된 격리실과 강박도구 활용 및 정착을 위한 노력 4. 격리·강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프로그램 연구 추진 5. 의료진 및 직원을 대상으로 격리·강박 관련 교육과 훈련 강화 6. 보호사의 역할과 자격을 규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36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개선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2016)	<p>1.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적극 행사하여 여객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부잔교(浮棧橋)와 차도선(車渡船)의 차량진출입 갑판 등의 바닥표면 재질 및 설치물에 대한 규정을 마련, 지도·감독 실시하, 장애인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 마련, 여객선 설계·건조·검사·운영 등의 과정에 걸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고려될 수 있도록 여객선 설계자, 제조자, 소유자, 운영자, 검사담당자, 해사안전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에 대해 교육,</p> <p>2.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의 여객선 승하선, 항만 시설이용 등에 있어 필요한 인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p> <p>3. 한국해운조합회장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향후 여객선을 건조, 개조, 수리, 용도 변경 등을 할 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지도를 강화하기 바람</p> <p>4. 국민안전처장관은, 가. 향후 새롭게 건조될 유선(遊船) 및 도선(渡船)에 대해 선박의 규모, 승선정원, 항해 예정시간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선박 탑승편의시설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나. 유선 및 도선에 시각장애인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는 등의 장애인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선 및 도선 사업자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바람 다. 향후 새롭게 설치될 유선장 및 도선장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p>
37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제도개선 정책권고(2016)	<p>1. 활동지원서비스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급여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추가급여량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 바람</p> <p>2.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바람</p> <p>3.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단가를 다른 유사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바람</p>
38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내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16)	<p>보건복지부장관에게, 1.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2. 공동생활가정 관련 공통 운영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 3. 공동생활가정의 다양한 모델 개발 필요. 4. 인권교육을 강화 5.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p> <p>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장애인의 공동생활가정 입소를 위한 신청 및 이용안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대체인력 지원, 교육사업,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사정에 적합한 종합적인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공동생활가정 지원방안 마련.</p>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39	장애인 안전권 강화를 위한 정책권고(2016)	<p>국민안전처 장관에게,</p> <p>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안전대책을 포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집행계획 작성지침에 반영하기 바람</p> <p>나.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p> <p>다.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장애당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바람</p> <p>라.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경보·피난 설비를 널리 보급하고, 다양한 경보·피난 설비를 연구·개발하기 바람</p>
40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6)	<p>법무부장관이 2016. 8. 29. 입법예고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표명</p> <p>1.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에 대하여,</p> <p>가)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음.</p> <p>나) 보호관찰 기간 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제33조 제2항과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제52조 제13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p> <p>2. 치료감호 가종료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제34조의2의 최초 유치 기간은 20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p>
41	제주도 장애인 인권보장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 의견표명(2016)	<p>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조사 및 구제권한을 규정할 경우에 대한 위원회 유권 해석</p>
4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2016)	<p>제29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같은 조 제2항의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p> <p>3-1. <추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실시하는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전보 등의 시험</p> <p>5-1.<추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생선발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시험</p> <p>5-2. <추가>「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른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인정 시험</p> <p>제29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같은 조 제2항의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p> <p>3-1. <추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실시하는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전보 등의 시험</p> <p>5-1.<추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생선발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시험</p> <p>5-2. <추가>「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른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인정 시험</p>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43	장애인 접근성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17)	<p>1. 우정사업본부장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가. 장애인이 각 우체국,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포함)를 이용함에 있어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6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시설을 정비하고, 물적·인적 서비스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바람 나. 위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상시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p> <p>2. (주)000, (주)00백화점, 00쇼핑(주), (주)000리테일, (주)0000, (주)000, 00000유통 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 가. 장애인이 대형 판매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6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시설을 정비하기 바람 나. 위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상시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p>
44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17)	<p>1. 교육부장관에게, 가. 유치원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 통합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치원 특수학급의 설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개별 유치원에 대해 특수학급의 정원을 준수하고 장애 유아를 정원 내로 입학시키도록 하는 지침을 강화하기 바람.</p> <p>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장애 유아의 의무교육을 위한 최소지원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장애 영유아 교육기관의 교육환경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 유아특수교사를 충원하고, 보육종합지원센터에 특수교사를 배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다. 보조인력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비롯한 장애 영유아 보육기관의 설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마.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지원하고,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지원체계를 구축하기 바람.</p> <p>3. 국무총리에게,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 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위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정책 조정 등을 수행하기 바람.</p>
45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이용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2017)	<p>1. 지역별 장애인 거주현황과 이용 욕구 등을 고려하여 그 수요에 맞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기 바람.</p> <p>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행동문제 발생 시 행동중재의 원칙, 중재의 방법과 과정 등을 포함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바람.</p> <p>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추가 인력을 배치하거나 시설유형을 다양화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p> <p>4.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이용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p>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46	HIV 감염인과 AIDS 환자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2017)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의사 국가시험에서 감염관리 지침과 HIV/AIDS 감염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치료과정에서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령을 보완하기 바람. 2.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가. 의료인 인식개선을 위해 ‘HIV/AIDS 감염인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가이드’를 개발하고, 나. 국·공립병원 의료인을 대상으로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인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다. ‘HIV/AIDS 감염인 호스피스 및 요양(돌봄) 서비스 가이드’ 및 ‘HIV/AIDS 감염인의 요양(돌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요양(돌봄) 서비스 대책을 마련하고, 라. HIV/AIDS 감염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현실화하기 바람. 3.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도립병원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47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2017)	1. 보건복지부장관은, 가. 2019. 1. 1.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별지1>을 참고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1]과 [별표2]를 개정하기 바람. 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이 아니거나 또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도 장애인의 접근,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서 장애인에게 인적 서비스 제공 등 대안적 조치가 강구될 수 있도록, <별지2>를 참고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개정하기 바람.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라. 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및 도로점용허가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2. 기획재정부장관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투자비용외에 일반공중이용시설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투자한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건물구조변경 및 세부기준 적합 등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9]를 개정하기 바람. 3. 행정안전부장관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투자비용외에 일반공중이용시설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투자한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 바람.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p>4.국토교통부장관은, 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그에 따른 시설주 부담이 경감되도록, <별지 3>을 참고하여 「도로법」 제68조를 개정하기바람. 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이더라도 접근로, 출입구, 출입문 등 최소한의 시설은 건축 설계 시부터 장애인의 접근권이 고려될 수 있도록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실무교육시장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 사항을 포함하기바람.</p> <p>5.시·도지사는, 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접근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바람. 나. 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및 도로점용허가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p>
48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제한 지자체 조례 개정 권고(2017)	<p>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포함)의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집 등)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용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74개 기초단체가 128개 시정이 필요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장에게,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시정되도록 노력할 것을 각각 권고함.</p>
4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7)	<p>개정안이 장애인의 관광활동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대상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관광 접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를 의무대상자로 추가하고 관광시설을 의무대상시설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개정안에는 직접차별 금지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 관련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등도 차별 행위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회의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표명(2017. 2. 14.)</p>
5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표명(2017)	<p>「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시행 전 당사자 및 가족, 정신의료기관, 시설관계자 등이 언론 및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의견대립이 심한 상황에서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의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자·타해 위험 기준의 보완', '행정입원 시 요건강화' 등 10개 항목에 대해 조항을 개정하도록 의견표명함.</p>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51	평생교육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표명(2017)	<p>교육부장관이 2017. 4. 11. 입법예고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할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책임과 역할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배치된 평생교육사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관련한 직무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2	장애인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의견표명(2017)	<p>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의 교육권 증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은 장애인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신설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장과 강서구청장은 지역사회에서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 제11조 평등정신에 위배된다.
53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17)	<p>「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만을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 의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하는 지적장애인 등의 평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삭제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함</p>
54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중계방송 등 수어통역 미제공에 대한 의견표명(2018)	<p>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SBS 사장에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및 2018 평창 패럴림픽 개·폐막식에 수어통역 방송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및 평창 패럴림픽 개·폐막식 현장에서 전광판 등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p>
55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2018)	<p>개정안은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정보접근성과 인적서비스 제공만을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장차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②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이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개정안에는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측면 및 장애인보조기구 제공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음.</p>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56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최도자 의원 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보고(2018)	대상기관에 이행실태점검에 관한 별도의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대상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도 있으며, 반발을 야기할 수도 있어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또한, 보건복지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사업의 목적도 '장애인차별금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이행 실태점검을 위한 별도의 관리주체를 두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삭제 필요함.
57	방송에서의 장애인 비하에 대한 의견표명 (2018)	문화방송 대표이사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차별적 표현이 방송 프로그램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문화방송을 비롯한 방송사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비하 및 차별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58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2018)	수어통역 방송의 의무 편성비율이 5%로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수어방송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수어방송 편성 의무비율에 따른 수어방송의 양적 수치가 줄어드는 만큼 청각장애인의 수어통역 방송 접근권이 떨어지는 바,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필수사업자의 수어통역방송 비율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59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정책권고(2018)	국가인권위원회는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함.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바우처) 택시 도입과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광역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60	시각장애인 인적서비스 미제공으로 인한 이동권 침해 정책권고(2018)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개정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61	구직 장애인에게 장애 원인 등 정보제공 요청은 장애인 차별 (2018)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함.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구직신청서(장애인용) (이하 '구직신청서'라 한다.)에 장애인의 직업수행능력과는 무관한 장애 원인을 기재하지 않도록 구직신청서에서 장애 원인 항목을 삭제하고, - 구직신청서의 작업능력 항목을 구직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항목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세부 작업능력 정보와 고용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구직 장애인이 직접 고지할 수 있도록 구직신청서를 개정하고, - 피진정인을 포함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장애인 일자리 홈페이지 등에서 구직 장애인에게 장애 원인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구직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와 관련된 작업능력 항목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장애인 차별과 혐오 해소를 위한 토론회

부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란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1., 2009. 5. 22., 2010. 5. 11., 2011. 3. 29., 2011. 6. 7., 2013. 3. 23., 2016. 2. 3., 2017. 9. 19.>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건"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 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관광활동"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용역 등을 제공받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

- 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4.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5.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6.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7.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8.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9.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20.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1.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

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차별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
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
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
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
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
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
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
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
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어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교육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7.>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들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11.>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

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11.>

-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

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3., 2017. 9. 19.>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6. 2. 3.>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3. 3. 23., 2017. 7. 26.>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11., 2014. 1. 28., 2017. 12. 19.>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11., 2013. 8. 13.>

[제목개정 2010. 5. 11.]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3. 29.>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

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2. 10. 22.>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참정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7.>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 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 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이하 이 항에

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 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

를,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①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 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6장 벌칙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1.>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 5. 11.>

③ 삭제 <2010. 5. 11.>

④ 삭제 <2010. 5. 11.>

⑤ 삭제 <2010. 5. 11.>

부칙 <제15272호, 2017. 12.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장애인 차별과 혐오 해소를 위한 토론회

| 인 쇄 | 2019년 4월

| 발 행 | 2019년 4월

| 발행인 | **최 영 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 주 소 | (4760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회관 8층

| 전 화 | (051) 710-9720 | F A X | (051) 710-9717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ISBN 978-89-6114-682-1 93330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